

이 과제는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9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고용연계성	2
제3절 연구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
1.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6
2.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7
3.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7
4. 혁신조달에 관한 연구	8
5. 소결	9
제2장 제도 및 정책	10
제1절 개관	10
제2절 조달청의 제도 및 정책	12
1. 벤처나라 운영	12
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15
3.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17
제3절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 및 정책	19
1.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 향상	19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20
3. 창업기업의 생산설비보유 요건 완화	21
4. 직접생산확인제도 수수료 면제제도 도입	21
제4절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제도 및 정책	21
1.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22

2.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22
3. 수의계약 요건 완화	24
4.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	24
5. 창업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 경감	24
제5절 소결	25
제3장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특성	28
제1절 일자리의 양	28
제2절 일자리의 질	34
제4장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고용 변화 추정	38
제1절 창업기업의 매출구조, 매출액 및 고용지표 간 관계	39
1. 분석 자료	39
2. 분석 결과	41
제2절 시나리오 설정 방법 및 내용	59
제3절 고용의 양적 및 질적 변화 추정 결과	60
제4절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고용 변화 추정 결과	67
제5절 소결	72
제5장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내용	74
제1절 좌담회 구성개요	74
제2절 공공조달 참여 창업벤처기업 좌담회 내용	76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76
2.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 ..	78
3.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 ..	79
4.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	79
제3절 공공조달 미참여 창업벤처기업 좌담회 내용	80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80
2.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 ..	82
3.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 ..	82
4.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	82
제4절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내용	83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83
2. 실제 창업벤처기업 대상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때 공공 기관이 처하게 될 제약	85
3.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약 추가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86
4.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정책의 개선방안	86
제5절 소결	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0
제1절 결론	90
제2절 단기적인 정책제언	92
제3절 중장기적인 정책제언	95
제4절 정책제언 요약	98
참고문헌	100

표 목 차

〈표 2- 1〉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중소벤처기업부(2019.4)]	19
〈표 3- 1〉 기술기반 창업 업종 분류 기준	29
〈표 3- 2〉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 업종별	30
〈표 3- 3〉 조달대상 분류 기준	31
〈표 3- 4〉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 조달대상별	33
〈표 3- 5〉 창업기업의 고용의 질: 업종별	35
〈표 3- 6〉 창업기업의 고용의 질: 조달대상별	36
〈표 4- 1〉 기초통계(창업기업실태조사, 전체 창업기업)	42
〈표 4- 2〉 기초통계(창업기업실태조사, 벤처인증기업)	43
〈표 4- 3〉 기초통계(자체 설문조사, 전체 창업기업)	44
〈표 4- 4〉 기초통계(자체 설문조사, 벤처인증기업)	46
〈표 4- 5〉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	48
〈표 4- 6〉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 간 관계 ..	50
〈표 4- 7〉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51
〈표 4- 8〉 창업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 간 관계 ..	53
〈표 4- 9〉 창업기업의 근속연수, 매출액 및 정부매출 간 관계	54
〈표 4-10〉 창업기업의 산업재해율,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56
〈표 4-11〉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	58
〈표 4-12〉 시나리오 예측 관련 설문 답변 내역 기초통계	60
〈표 4-13〉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 예측	62
〈표 4-14〉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1인당 연간 총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예측	63
〈표 4-15〉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근속연수 및 연간 산업 재해율에 대한 영향 예측	64

〈표 4-16〉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4대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 예측	65
〈표 4-17〉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요약	66
〈표 4-18〉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 현실 제약을 고려한 구간 예측 결과	67
〈표 4-19〉 추가 정책효과 시나리오 예측 관련 설문 답변 내역 기초통계 ..	68
〈표 4-20〉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 예측	68
〈표 4-21〉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1인당 연간 총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예측	69
〈표 4-22〉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근속연수 및 연간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 예측	69
〈표 4-23〉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4대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 예측	70
〈표 4-24〉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요약	70
〈표 4-25〉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 현실 제약을 고려한 구간 예측 결과	71
〈표 5- 1〉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개최 개요	76
〈표 6- 1〉 미국 8(a)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연차별 자립 정도	97
〈표 6- 2〉 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창업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방안	98

그림목차

[그림 1-1]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연계성	4
---	---

요 약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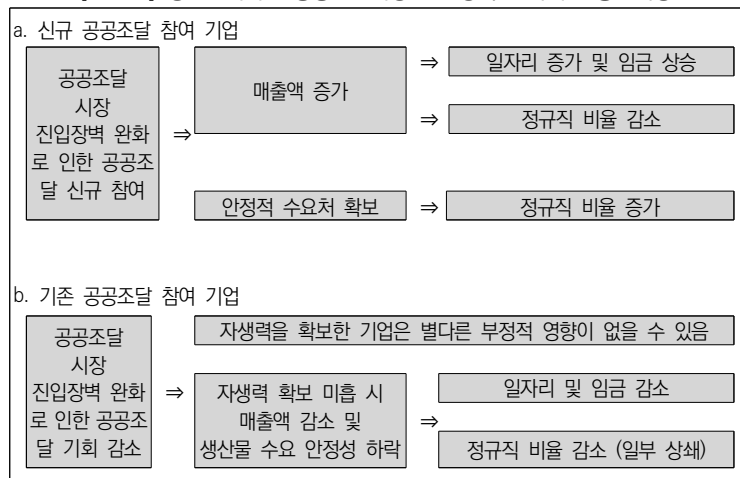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창업기업의 생산설비 보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시도
- 기획재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며 창업기업의 우수 R&D 결과물에 대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역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노력
- 한편 조달청은 벤처나라의 협약기관 및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 강화
- 본 연구는 관계 부처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거나 조만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둬.

제2절 고용연계성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원활해지면 정책 수혜기업에 대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주로 긍정적 효과 기대
- 반면 공공조달시장에 대해 특정 유형 기업의 진입이 원활해지는 것은 기존 공공조달에 참여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 영향 예측
-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연계성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음.

[그림 1]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연계성



- 결국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문호 확대는 노동시장에 대해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존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자생력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가 순효과

의 방향 및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

제3절 연구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는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에 활용
-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창업벤처기업 공공구매활성화정책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확인하고자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좌담회를 통한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실시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따른 고용효과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기선 외(2013), 김유빈 외(2015)],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임길환·정유훈(2014), 이우진 외(2017)],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김수환(2008), 홍충기·김병건(2017)], 혁신조달에 관한 연구[최종화 외(2014), 김대식 외(2016)] 등이 있음.

제2장 제도 및 정책

제1절 개관

- 창업·벤처기업(이하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

음. 하나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정책’(SME policy)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임.

- 이러한 두 가지 배경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별로 나누어서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음.

제2절 조달청의 제도 및 정책

1. 벤처나라 운영

- 공공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주는 등 판로개척을 돕고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를 2016년 10월 12일부터 오픈하였음.
-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가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신기술, 융합·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자격이 부여됨[조달청(2016.10)].
- 등록기업은 5년간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홍보하게 되고, 전자전적·주문(계약) 등을 거쳐 납품을 할 수 있음[조달청(2016.10)].
- 등록 상품의 가격·품질을 조달청이 사전·사후 검토하여 이용기관의 직접 거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음[조

달청(2016.10)].

- 조달청은 벤처나라 구매 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벤처나라 물품 구매 담당과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매를 촉진할 계획[조달청(2019. 4)].
- 벤처나라 지정부터 상품 등록 및 판매, 종합쇼핑몰로의 진출 등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진입·성장 전(全)단계에 걸친 전문 컨설팅 상담을 지원하는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조달청(2019. 4)].

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 조달청은 2019년 5월 17일 공공에 활용될 수 있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물품 및 서비스)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수요기관이 시제품 사용 후 시제품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계획’을 공고함(조달청 공고 제2019-79호).
- 제안분야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미세먼지 저감 분야임.
- 대상제품은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제품 및 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안임.

3.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 조달청은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고 최근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힘[조달청(2019. 5)].
- 첫째, 조달청은 수요공급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부부처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 간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임[조달청(2019. 5)].
- 둘째, 조달청은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부처 우수R&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임[조달청(2019. 5)].
- 셋째, 조달청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조달청(2019. 5)].

제3절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 및 정책

1.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 향상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

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임[중소벤처기업부(2019. 4)].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상향할 계획임[관계부처합동(2017.10), 중소벤처기업부(2019.4)] .
- 현재 중소기업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이 50%인데 이를 70%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임.
- 현재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이 10%인데 이를 15%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임.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창업기업 및 판로개척 단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2018년에 도입됨[중소벤처기업부(2019.4)].
- 중소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의 경우 2018년 268억 원, 2019년 1~4월은 231억 원을 기록하였음. 시범구매 참여 기업과 공공기관의 숫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구매실적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중소벤처기업부(2019.5)].

3. 창업기업의 생산설비보유 요건 완화

- 과거에는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 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4. 직접생산확인제도 수수료 면제제도 도입

-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업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의 2].

제4절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제도 및 정책

1.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 기획재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집중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를 위하여 창업벤처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함(국가계약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2.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3).

3.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창업기업 등의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였음.

4.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억 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을 폐지하였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5. 창업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 경감

- 입찰 참여 중소·벤처업체 비용 경감을 위해 제안서 제출방법 및 실적발급 시스템을 개선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3장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특성

제1절 일자리의 양

- 본 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입수한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양적 고용지표를 들여다보기로 함.
- 창업기업의 고용지표를 표본기업 전체 및 업종별로 살펴보았는데, 업종별 그룹은 입수한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두 자리 숫자로 기재된 내역을 기반으로 기술기

만 제조업, 기술기반 서비스업, 기타 산업 등 세 그룹으로 나누었음.

○ <표 1>은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기업 전체 및 업종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 창업기업에 대해 총 고용인원 및 고용형태별, 성별, 직군별, 연령대별 종사자 수의 산술평균을 제시함.

<표 1>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 : 업종별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기술기반 제조업 평균	기술기반 서비스업 평균	기타산업 평균
총 고용인원(명)		4.95	7.40	6.35	3.62
고용형태별 인원(명)	정규직	4.38	6.71	5.63	3.16
	비정규직	0.57	0.69	0.72	0.46
성별 인원 (명)	남성	3.02	5.76	3.26	2.35
	여성	1.93	1.64	3.10	1.27
직군별 인원 (명)	경영관리	1.97	3.05	2.37	1.51
	연구개발	0.20	0.20	0.38	0.09
	일반사무	1.17	0.87	2.05	0.68
	기능생산	0.73	2.15	0.54	0.58
	영업판매	0.43	0.74	0.36	0.42
	단순노무	0.45	0.39	0.65	0.34
연령대별 인원 (명)	20대이하	0.37	0.45	0.62	0.20
	30대	1.17	1.73	1.75	0.71
	40대	1.68	2.65	2.23	1.15
	50대	1.26	2.08	1.34	1.05
	60대이상	0.47	0.50	0.41	0.51
기업 수 (개)		8,000	843	2,728	4,42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제2절 일자리의 질

□ 본 절에서는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및 자체적으로

1,020개 창업기업에 대해 실시한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질적 고용지표를 들여다보기로 함.

□ <표 2>는 표본기업 전체 및 업종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 창업기업
에 대해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의 산술평균을 제시함.

〈표 2〉 창업기업의 고용의 질 : 업종별

A.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n=8,000)	기술기반 제조업 평균 (n=843)	기술기반 서비스업 평균 (n=2,728)	기타산업 평균 (n=4,429)
정규직 비율(%)	89.87	88.56	90.64	89.64
여성 종사자 비율(%)	40.24	16.05	49.58	39.08
30대 이하 종사자 비율(%)	25.96	26.70	34.35	20.58
B. 자체 설문조사 자료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n=1,020)	기술기반 제조업 평균 (n=176)	기술기반 서비스업 평균 (n=294)	기타산업 평균 (n=550)
연간 총급여(천 원)	33,098.04	34,134.64	33,146.61	32,736.6
주당 근로시간(시간)	40.95	41.91	40.14	41.08
근속기간(월)	37.11	41.57	36.33	36.11
연간 산업재해율(%)	0.37	0.23	0.26	0.48
고용보험가입률(%)	92.42	95.17	89.41	93.14
건강보험가입률(%)	97.09	98.64	97.09	96.60
국민연금가입률(%)	95.95	97.57	96.34	95.23
산재보험가입률(%)	96.47	99.43	93.54	97.0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제4장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고용 변화 추정

제1절 창업기업의 매출구조, 매출액 및 고용지표 간 관계

1. 분석 자료

가. 창업기업실태조사

- 「창업기업실태조사」는 2013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사업 개시 시점에서 7년이 지나지 않은 전국의 모든 기업체가 모집단을 이룸.
-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의 표본 크기는 전국 17개 시도 소재 8,000개 기업체임.
- 「창업기업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기업 일반현황 관련 7개, 창업 준비단계 관련 12개, 실행단계 13개, 성장단계 19개, 창업지원정책 관련 4개 등 총 55개에 달하는데, 본 연구를 위해 중기부 및 창업진흥원과의 협의하에 입수한 원자료는 연구 목적과 직접 관련된 항목 일부만을 포함함.

나. 자체 설문조사

- 관계 부처가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할 때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 및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업들이 예측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창업기업실태조사」가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설문 항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양 관련 변수에 비해 질 관련 항목은 고용형태 관련 설문 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기타 일

자리 질 변수(임금수준, 근로시간, 근속연수, 산업재해율, 4대보험 가입률 등)에 대한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일부를 입수하여 활용하는 것에 더해 전문 조사업체가 위탁 수행한 별도 자체 설문조사를 1,020개 표본 창업기업에 대해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였음.

2. 분석 결과

가. 기초통계

- <표 3>은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에 포함된 창업기업의 핵심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표 3> 기초통계(창업기업실태조사, 전체 창업기업)

변수(단위)	관측 수	산술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총 고용인원(명)	8,000	4.95	3	9.75
정규직 비율(%)	7,890	89.87	100	23.78
매출액(천 원)	8,000	920,946.9	218,000	3,803,125
정부매출 비율(%)	8,000	3.82	0	17.55
정부매출 유무 더미	8,000	0.07	0	0.26
기업 연령	8,000	3.28	3	1.94
기술기반 제조업 더미	8,000	0.11	0	0.31
기술기반 서비스업 더미	8,000	0.34	0	0.47
기타 산업 더미	8,000	0.55	1	0.50
창업자 여성 더미	8,000	0.27	0	0.45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	8,000	46.79	46	9.71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 다음으로 <표 4>는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자체 설문조사에 포함

된 창업기업의 핵심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표 4〉 기초통계(자체 설문조사, 전체 창업기업)

변수(단위)	관측 수	산술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총 고용인원(명)	1,020	17.53	9	36.66
1인당 연간 총급여(천 원)	1,012	33,098.04	30,000	9,015.77
주당 근로시간(시간)	1,020	40.95	40	4.53
근속연수(월)	1,020	37.11	36	15.16
연간 산업재해율(%)	1,020	0.37	0	2.76
고용보험 가입 비율(%)	1,020	92.42	100	23.83
건강보험 가입 비율(%)	1,020	97.09	100	13.17
국민연금 가입 비율(%)	1,020	95.95	100	15.13
산재보험 가입 더미	1,020	0.96	1	0.18
연간 매출액(천 원)	987	4,461,989	1,600,000	8,889,000
정부매출 비율(%)	1,020	16.12	0	32.85
정부매출 유무 더미	1,020	0.26	0	0.44
기업 연령	1,020	6.66	7	1.21
기술기반 제조업 더미	1,020	0.17	0	0.38
기술기반 서비스업 더미	1,020	0.29	0	0.45
기타 산업 더미	1,020	0.54	1	0.50
창업자 여성 더미	1,020	0.16	0	0.37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	1,005	47.19	47	8.96

자료 : 자체 설문조사.

나. 총 고용인원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 대상 매출 유무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음.

〈표 5〉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종속변수 : 총 고용인원(명)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2.37*** (0.07)	2.31*** (0.07)	2.31*** (0.07)	2.31*** (0.07)
정부매출유무더미	1.79*** (0.39)	1.79*** (0.39)	1.78*** (0.39)	1.77*** (0.39)
기업연령		0.23*** (0.05)	0.23*** (0.05)	0.23*** (0.05)
기술기반제조업더미		3.37*** (0.34)	3.37*** (0.34)	3.25*** (0.34)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2.67*** (0.22)	2.69*** (0.22)	2.63*** (0.22)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11 (0.23)	-0.07 (0.23)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1 (0.01)	0.01 (0.01)
벤처기업더미				3.00*** (0.82)
상수	-24.54*** (0.86)	-25.92*** (0.85)	-26.31*** (1.01)	-26.27*** (1.01)
관측 수	7,986	7,986	7,986	7,986
R ²	0.13	0.16	0.16	0.16

주 :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다. 정규직 비율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 대상 매출 비율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됨.

〈표 6〉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 간 관계

종속변수 : 정규직 비율(%)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0.42** (0.18)	-0.41** (0.18)	-0.41** (0.18)	-0.42** (0.18)
정부매출비율	0.03** (0.02)	0.03** (0.02)	0.03** (0.02)	0.03** (0.02)
기업연령		-0.05 (0.14)	-0.05 (0.14)	-0.06 (0.14)
기술기반제조업더미		-0.91 (0.90)	-0.94 (0.90)	-1.13 (0.91)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1.00* (0.58)	1.00* (0.59)	0.89 (0.59)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17 (0.61)	-0.11 (0.61)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0 (0.03)	0.00 (0.03)
벤처기업더미				5.03** (2.20)
상수	94.98*** (2.25)	94.71*** (2.27)	94.82*** (2.70)	94.89*** (2.70)
관측 수	7,876	7,876	7,876	7,876
R ²	0.00	0.00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라. 1인당 연간 총급여와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와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 대상 매출 유무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됨.

〈표 7〉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종속변수: 1인당 연간 총급여(천 원)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941.80*** (188.34)	980.93*** (194.13)	937.49*** (196.69)	915.02*** (196.69)
정부매출유무더미	-724.95 (643.66)	-870.77 (656.41)	-694.05 (665.56)	-842.26 (668.52)
기업연령		-183.84 (232.55)	-189.66 (234.27)	-187.66 (233.89)
기술기반제조업더미		1,130.21 (776.88)	998.29 (787.12)	531.74 (819.03)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1,238.86* (669.10)	1,218.44* (682.60)	940.85 (695.19)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1,366.66* (772.77)	-1,357.42* (771.53)
설립당시창업자연령			3.65 (32.64)	10.43 (32.75)
벤처기업더미				1,929.57** (954.43)
상수	19,980.37*** (2,735.21)	20,124.82*** (3,211.79)	20,811.2*** (3,655.47)	20,784.99*** (3,649.58)
관측 수	972	972	960	960
R ²	0.03	0.03	0.03	0.04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자체 설문조사.

마. 주당 근로시간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표 8〉은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 대상 매출 비율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표 8〉 창업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 간 관계

종속변수 : 주당 근로시간(시간)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0.42*** (0.09)	0.35*** (0.10)	0.37*** (0.10)	0.37*** (0.10)
정부매출비율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기업연령		-0.00 (0.12)	-0.00 (0.12)	-0.00 (0.12)
기술기반제조업더미		0.52 (0.39)	0.57 (0.40)	0.48 (0.41)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0.72** (0.33)	-0.65* (0.34)	-0.71** (0.35)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12 (0.39)	0.12 (0.39)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2 (0.02)	0.02 (0.02)
벤처기업더미				0.39 (0.48)
상수	35.16*** (1.37)	36.23*** (1.61)	35.14*** (1.84)	35.11*** (1.84)
관측 수	979	979	967	967
R ²	0.03	0.04	0.04	0.04

주 :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자체 설문조사.

바. 근속연수와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표 9〉는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월 환산 근속연수와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 대상 매출 변수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표 9〉 창업기업의 근속연수, 매출액 및 정부매출 간 관계

종속변수: 근속연수(월 환산)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0.06 (0.32)	-0.22 (0.31)	-0.23 (0.31)	-0.25 (0.31)
정부매출비율	0.04 (0.03)	0.05** (0.02)	0.05* (0.02)	0.05** (0.03)
정부매출유무더미	-3.51* (1.99)	-3.78** (1.88)	-3.59* (1.88)	-4.05** (1.90)
기업연령		4.06*** (0.38)	4.05*** (0.38)	4.06*** (0.38)
기술기반제조업더미		5.35*** (1.26)	5.41*** (1.27)	4.84*** (1.32)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0.03 (1.07)	0.06 (1.09)	-0.28 (1.11)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2.43** (1.24)	-2.42** (1.24)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1 (0.05)	0.02 (0.05)
벤처기업더미				2.36 (1.55)
상수	36.53*** (4.70)	12.29** (5.17)	12.49** (5.84)	12.40** (5.84)
관측 수	979	979	967	967
R ²	0.00	0.13	0.13	0.13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자체 설문조사.

사. 산업재해율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유무 간 관계

□ 〈표 10〉은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연간 산업재해율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 대상 매출 유무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표 10〉 창업기업의 산업재해율,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종속변수 : 산업재해율(%)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0.00 (0.06)	-0.00 (0.06)	0.00 (0.06)	0.00 (0.06)
정부매출유무더미	-0.15 (0.20)	-0.13 (0.21)	-0.15 (0.21)	-0.14 (0.21)
기업연령		0.11 (0.07)	0.11 (0.07)	0.11 (0.07)
기술기반제조업더미		-0.26 (0.25)	-0.28 (0.25)	-0.23 (0.26)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0.23 (0.21)	-0.26 (0.22)	-0.23 (0.22)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12 (0.24)	0.12 (0.24)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1 (0.01)	-0.01 (0.01)
벤처기업더미				-0.20 (0.30)
상수	0.35 (0.86)	-0.18 (1.01)	0.07 (1.15)	0.07 (1.15)
관측 수	979	979	967	967
R ²	0.00	0.00	0.01	0.01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자체 설문조사.

아. 4대보험 가입률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유무 간 관계

□ 〈표 11〉은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 대상 매출 유무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표 11〉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종속변수 : 4대보험 가입률(%)

변 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log(매출액)	0.05*** (0.00)	0.01*** (0.00)	0.02*** (0.00)	0.02*** (0.00)
정부매출유무더미	0.04** (0.02)	0.01 (0.01)	-0.00 (0.01)	0.01 (0.01)
기업연령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기술기반제조업더미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2)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0.02 (0.02)	0.01 (0.01)	0.01 (0.01)	-0.03** (0.01)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01 (0.02)	0.01 (0.01)	0.03** (0.01)	-0.01 (0.02)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벤처기업더미	0.03 (0.02)	0.01 (0.01)	0.01 (0.02)	0.01 (0.02)
상수	0.20** (0.09)	0.75*** (0.05)	0.78*** (0.06)	0.71*** (0.07)
관측 수	967	967	967	967
R ²	0.11	0.04	0.04	0.04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자체 설문조사.

제2절 시나리오 설정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할 시나리오 설정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1,020개 창업기업으로부터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정부 정책이 의도하는 대로 완화될 때 각 기업의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

한 답변을 받아 정량화함.

- 창업기업의 매출액 및 정부매출 변수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변화할 때 해당 기업의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 <표 5>와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활용함.
- 한편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을 제외한 다른 일자리의 질 관련 지표(임금수준, 근로시간, 근속연수, 산업재해율, 4대보험 가입률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표 7>~<표 11>에 제시된 창업기업의 해당 고용의 질 지표 및 매출액과 정부매출 변수 간 관계를 활용할 것임.
- 다만 이렇게 예측되어 나타난 공공조달정책 변화의 고용효과는 정책이 의도대로 시행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상정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현실에서의 제약을 반영하여 실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효과는 최대치의 25~75% 사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최종 결과를 제시함.

제3절 고용의 양적 및 질적 변화 추정 결과

-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1,020개 창업기업으로부터 공공조달 진입 장벽이 정부 정책이 의도하는 대로 완화될 때 각 기업의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정량화한 결과의 기초통계는 <표 12>에 제시됨.

〈표 12〉 시나리오 예측 관련 설문 답변 내역 기초통계

	산술평균	중위값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2018년 연간 매출액 (천 원)	4,461,989	1,600,000	100,000,000	0	8,889,000
2018년 정부대상 매출 비율(%)	16.12	0	100	0	32.85
2018년 정부대상 매출 유무 더미	0.26	0	1	0	0.44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연간 매출액 변화(%)	5.03	0	300	-50	20.19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p)	1.47	0	80	-50	6.96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정부대상 매출 유무 더미 변화	0.07	0	1	-1	0.26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이제 최근 시행되기 시작했거나 조만간 시행 계획인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표 5〉와 〈표 6〉에 제시된 추정 결과 중 가장 많은 독립변수가 통제된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3〉에 제시됨.

〈표 13〉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 예측

	총 고용인원에 대한 영향(명)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11 (= $\log(4,461,989 \times 1.0503) - \log(4,461,989)$) $\times 2.31$)	-0.02 (= $\log(4,461,989 \times 1.0503) - \log(4,461,989)$) $\times (-0.42)$)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0.04 (= 1.47×0.03)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12 (= 0.07×1.77)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23 (= $0.11 + 0.12$)	0.02 (= $-0.02 + 0.0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 한편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표 7>과 <표 8>에 서 가장 많은 독립변수가 통제된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됨.

<표 14>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1인당 연간 총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예측

	1인당 연간 총급여에 대한 영향 (천 원)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시간)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44.91 ($=\{\log(4,461,989*1.0503)-\log(4,461,989)\}*915.02$)	0.02 ($=\{\log(4,461,989*1.0503)-\log(4,461,989)\}*0.37$)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0.01 ($=1.47*(-0.01)$)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	-
증감 예측치 총합(A+B+C)	44.91	0.01 ($=0.02-0.01$)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한편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근속연수와 연간 산업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표 9>~<표 10>의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됨.

<표 15>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근속연수 및 연간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 예측

	근속연수에 대한 영향(월)	연간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	-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0.07 ($=1.47*0.05$)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28 ($=0.07*(-4.05)$)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21 ($=0.07-0.28$)	0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한편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표 11>에 제시된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6>에 제시됨.

<표 16>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4대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 예측

	고용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 (%p)	건강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 (%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00 (= $\log(4,461,989*1.0503)-\log(4,461,989)$)*0.05)	0.00 (= $\log(4,461,989*1.0503)-\log(4,461,989)$)*0.01)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00 (=0.07*0.04)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00 (=0.00+0.00)	0.00
	국민연금 가입률에 대한 영향 (%p)	산재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 (%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00 (= $\log(4,461,989*1.0503)-\log(4,461,989)$)*0.02)	0.00 (= $\log(4,461,989*1.0503)-\log(4,461,989)$)*0.02)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00	0.00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16>에 제시된 결과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4대보험 가입률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을 보여줌.

- 정부대상 매출 변수가 4대보험 가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매출액 증가를 통한 4대보험 가입률 진작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조달정책 변화의 현실 제약을 반영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효과는 <표 17>에 제시함.

〈표 17〉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
현실 제약을 고려한 구간 예측 결과

고용의 양 및 질 지표	증감 예측치	표본 평균 대비 비율 변화
총 고용인원	0.06~0.17명 증가	0.33~0.98% 증가
정규직 비율	0.01~0.02%p 증가	0.01~0.02% 증가
1인당 연간 총급여	11,228~33,683원 증가	0.04~0.11% 증가
주당 근로시간	9~27초 증가	0.01~0.02% 증가
근속연수	0.05~0.16개월 감소	0.14~0.43% 감소
연간 산업재해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고용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건강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국민연금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산재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제4절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고용 변화 추정 결과

□ 6장에 제시될 정책제언 중, 만약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의무구매비율을 5%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얼마나 될지 추정한 결과를 미리 제시하고자 함.

○ <표 18>은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추가 정책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앞서 제시된 창업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해당 정책의 창업기업 매출액, 정부대상 매출 비중, 그리고 정부대상 매출 유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도록 요청하여 입수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표 18〉 추가 정책효과 시나리오 예측 관련 설문 답변 내역 기초통계

	산술평균	중위값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매출액 변화(%)	0.88	0.50	2.50	0	1.18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대상 매출 비율 변화(%p)	2.13	1.25	5.5	0.5	2.29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대상 매출 유무 더미 변화	0.04	0.04	0.08	0.01	0.03

자료 :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현실에서의 제약을 반영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효과가 <표 19>에 제시됨.

<표 19>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
현실 제약을 고려한 구간 예측 결과

고용의 양 및 질 지표	증감 예측치	표본 평균 대비 비율 변화
총 고용인원	0.09명 증가	0.13~0.38% 증가
정규직 비율	0.06%p 증가	0.02~0.05% 증가
1인당 연간 총급여	8,020원 증가	0.01~0.02% 증가
주당 근로시간	72초 감소	0.01~0.04% 감소
근속연수	0.05개월 감소	0.03~0.10% 감소
연간 산업재해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고용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건강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국민연금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산재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제5장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내용

제1절 좌담회 구성개요

-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창업벤처기업 공공구매 활성화정책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확인하고자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좌담회를 통한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음(표 20).

〈표 20〉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개최 개요

일시 및 장소	좌담회 참여그룹	좌담회 참여명단
2019. 6. 24. 10:00~12:00 (주)나우앤피처 좌담회룸	공공조달시장 참여 창업벤처기업	A사(교육서비스분야 창업기업) B사(목재가공-제조업분야 창업기업) C사(정보서비스업 벤처기업) D사(정보처리 IT개발-제조업분야 벤처기업) E사(정보서비스업분야 벤처기업)
2019. 6. 25. 10:00~12:00 (주)나우앤피처 좌담회룸	공공조달시장 미참여 창업벤처기업	F사(여가서비스업분야 창업기업) G사(과학기술서비스업분야 창업기업) H사(제조업-컴퓨터주변기기분야 창업기업) I사(제조업-서브조인트 파이프제조분야 창업기업) J사(제조업-스포츠용품분야 벤처기업) H사(과학기술서비스업-기술서비스분야 벤처기업)
2019. 7. 5. 10:00~12:00 서울역 KTX2 회의실	공공구매기관	T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K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S기관 (시장형 공기업) H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K기관 (시장형 공기업) G기관 (시장형 공기업) N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제2절 공공조달 참여 창업벤처기업 좌담회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벤처나라

- 참석한 기업 모두 벤처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벤처나라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함. 특히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힘든 창업벤처기업에 나라장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임.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면제제도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면제제도는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기업들도 존재하고 유용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함. 다만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서류업무가 많다는 점은 문제임.
-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창업벤처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둔다고 하더라도 수요기관에서 감사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임.
- 경쟁적 대화방식
 -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발주청과 특정업체의 결탁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계약방식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존재함. 이러한 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전반적인 의견
 - 전반적으로 창업 후 연도만을 기준으로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음. 7년이 지난 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창업벤처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쉽게 주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할 경우 어렵게 기업을 키워낸 선행주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2.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

□ 재무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 신규 창업벤처기업들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완화할 경우 기존 창업벤처기업들이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은 기존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 대체시장을 통한 재무성과 유지의 가능성

○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으로의 고객대체를 통해 기업의 재무성과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음.

3.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

□ 전반적인 고용에 대한 영향

○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기존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율이 낮아질 경우에도 기존기업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고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현상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대체적인 시장을 찾을 것이기 때문임.

□ 산업재해율, 4대보험 가입률 등에 대한 영향

○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기존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율이 낮아질 경우 산업재해율이나 4대보험 가입률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 판로지원 관련

- 박람회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표만을 맞추기 위한 생색내기용인 경우가 많음. 기업들의 판로개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람회 등의 운영이 되어야 함.

제3절 공공조달 미참여 창업벤처기업 좌담회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벤처나라

- 참석한 6개 기업 중 벤처나라를 알고 있던 기업은 세 군데였고, 나머지는 벤처나라를 처음 들어봤다고 함. 벤처나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함. 이름도 ‘벤처나라’보다는 좀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는 ‘벤처장터’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됨.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면제제도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면제제도는 유용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함.

□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수의계약의 요건을 창업벤처기업에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런데 혁신적인 상품이어서 이 상품을 1개사만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비교견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

□ 제한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창업벤처기업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반함.

□ 경쟁적 대화방식

-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가격경쟁으로 흐를 경우에도 이러한 장점이 잘 발휘되기 힘들.

□ 전반적인 의견

- 위와 같은 제도들이 너무 쉽게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해야 창업벤처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

□ 재무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 서비스(설계)를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성과에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3.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

□ 고용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고용성과에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음. 왜냐하면 본사직원은 그대로 두면서 외주나 OEM 등



을 통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임.

4.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 각종 검증이나 인증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음.

제4절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벤처나라

- 벤처나라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음. 조달청 설명회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함. 그러나 벤처나라를 통해서 실제로 구입해본 적이 있다는 참석자는 없었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상향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이 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당 금액이 큰 공사 등을 통해서 목표비율을 채우는 것이 쉽기 때문에 물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도입

-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부담과 경쟁업체의 민원 때문에 수의계약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전반적인 견해

○ 창업벤처기업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위 정책들은 실제로 작동하기는 힘들.

2. 실제 창업벤처기업 대상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때 공공기관이 처하게 될 제약

□ 품질과 가격상의 제약

○ 품질이 가장 문제임. 아파트 건설을 하는 경우에 입주자들이 이름 없는 제품을 사용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음. 공공기관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기존에 잘 알려진 회사의 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해주면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음.

□ 의무구매제도 도입의 문제점

○ 만약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의무구매제도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음. 기존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의 경우에도 paper company가 많음.

3.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약 추가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논의

☐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약 추가의 의미

- 창업벤처기업 육성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음.

4.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정책의 개선방안

☐ 의무구매비율제도의 도입 관련

- 의무구매비율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면 공공기관들의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가 늘어날 것임. 예를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리더십 지표, 사회적 가치 지표 등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

-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임. 이를 위해서 하자보증 등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정부가 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경쟁적 대화방식

-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 절차가 아직 불명확함. 이의 사용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

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부터의 수의계약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에서는 이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두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 그러한 예임.

□ 기타

- 창업벤처기업들이 지나치게 공공조달시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기간을 한정하여 혜택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유형의 정부 정책 중 극히 일부이긴 하나, 해당 정책이 본래 취지대로 충실히 시행된다면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예측됨.
-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나타날 기업당 고용인원 증가 폭이 표본 평균 대비 0.33%에서 0.98% 사이인 것으로 예측되어, 고용의 양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창업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1장에서 해당 정책의 고용연계성을 분석할 때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출액 경로와 공공조달비율 경로에 걸쳐 상반되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 것과 부합함.
- 그 외 여러 고용의 질 관련 지표에 대해서도 대체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여러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만으로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통해서 고용효과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창업벤처기업 제품구매제도와 사회적 약자기업의 구매제도는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창업벤처기업 제품구매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고용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R&D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공구매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품의 개발 → 공공구매 → 민간시장 진출 → R&D에의 재투자 등 공급체계 전반이 선순환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구매가 전략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구매제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공구매제도는 창업벤처기업들이 민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창업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함.
 - 첫째,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의 매칭, 제도 간 연계성의 강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도입, 감사 부담의 경감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도입 여부, 일상

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의 완화,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 강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제2절 단기적인 정책제언

□ 수요와 공급의 매칭

-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 많은데 공공기관에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창업벤처기업들이 벤처나라에서 보다 다양한 홍보기회를 갖고 이것이 공공기관들의 수요와 매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벤처나라 등록만으로 납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수요기관들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창업벤처기업들의 제품의 우수성을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이것이 관련된 수요기관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함.
- 위와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조달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즉, 창업벤처기업 분야 및 혁신제품 분야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조달청 등에서 구매분석관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수요기관과 공급업체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구매분석관들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를 매칭해주기 위해서는 각 수요기관의 특성, 공급업체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구매분석관을 활용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업무분야 및 구매대상제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 현재 조달청에서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각 실시하고 있음. 조달청의 제도는 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의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제도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제도임.
- 이 두 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지원대상이나 지원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간 보완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양 제도의 지원대상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미세먼지 저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범구매 선정제품은 기술개발인증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술개발인증제품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청의 지원대상 사업분야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대상 인증분야를 일부 일치시킬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양 제도 간의 절차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양 제도는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에서 선정절차를 통과하여 시범구매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기술개발인증이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 간의 절차적인 연계가 필요함.

□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도입

-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에 각 부처·공공기관의 연간 조달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2019.7)].

- 창업벤처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구매를 하기보다는 혁신성이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도가 혁신조달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 제도는 ① 이미 존재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일부 중첩될 수 있다는 점, ② 공공기관의 구매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③ 혁신제품 지정을 받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도’를 통합함으로써 구매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술개발제품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감사 부담의 경감

- 창업기업의 우수 R&D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요건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감사의 부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 상황임. 최근 도입된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에도 참여자가 적을 경우 감사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실적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점에서도 감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나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창업벤처기업과의 수의계약,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로 인한 감사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처럼 적극행정면책이나 사전컨설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공공조달(혁신

조달 포함)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간의 인적 교류, 정보 교환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혁신조달을 위해 수의계약 등을 통한 발주청의 재량이 넓어질 경우에는 부패 발생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징계제도, 부정당업자제재제도 등)의 엄격한 집행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제3절 중장기적인 정책제언

□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도입 여부

- 현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5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10%) 등은 도입되어 있으나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이번 연구과정에서 공공구매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무구매비율(예컨대 5%)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그리고 이의 달성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① 이미 존재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일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 공공기관의 구매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③ 무늬만 창업벤처기업으로부터 공공구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④ 위의 비율(5%)은 이미 기

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점, ⑤ 특정기업만 공공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임.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선별해내는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앞서 4장 말미에 제시한 대로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구매비율을 5%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약간이나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고용의 질에 대한 추가 영향은 미미하나, 고용의 양에 대해서는 앞서 4장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정책의 효과로서 추정된 표본 평균 대비 0.33~0.98% 증가를 약간이나마 더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일상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의 완화

-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서류제출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이는 특히 공공조달시장 진출경험이 적은 창업벤처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창업벤처기업 관련협회의 시스템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벤처나라 포함)을 연계함으로써 각종 실적 등의 2중 제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 강화

-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구매에 대한 의존성을 점차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인 8(a)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기업에 연차별 자립정도를 제시하고 일정기간(5년)이 지나면 졸업시키는 제도를 운영하여 자립성을 키우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법제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보호'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을 민간 부문의 매출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일정한 목표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립성을 키워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고용의 양과 질을 일정 정도 높임으로써 자립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지에 따라 지원의 규모를 단계별로 조절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창업기업의 생산설비 보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며 창업기업의 우수 R&D 결과물에 대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역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조달청은 벤처나라의 협약기관 및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처럼 관계 부처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거나 조만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

제2절 고용연계성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원활해지면 정책 수혜기업에 대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경우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역시 증가할 것이고, 더불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근로자 임금 상승 역시 가능
 - 제4장에서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를 분석하여 <표 4-5>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해당 기업의 총 고용인원 사이에 강하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더불어 창업벤처기업 관점에서 안정적 수요처로 간주 가능한 공공조달의 특성상,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때 수혜 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상승할 것임.
 - 제4장에서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를 분석하여 <표 4-6>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정부대상 매출 비율과 정규직 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한편 창업벤처기업이 새롭게 공공조달 계약을 따냄으로써 정부매출 비율이 높아질 때 매출액 경로에 의한 일자리의 양 증가에 더해 추가로 고용인원이 늘어나게 됨.
 - <표 4-5>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정부매출 유무와 총 고용인원 사이에 강하게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안정적 수요처를 갖게 되면 창업벤처기업 입장에서 고용인원을 늘리기 용이한 상황이 되기 때문으로 추측됨.
- 다만 정책 수혜를 받은 창업벤처기업의 매출액이 늘 때, 비정규직 사용

이 증가하면서 정규직 비율은 낮아지게 됨.

- <표 4-6>에서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해당 기업의 정규직 비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창업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을 늘림으로써 매출액 증가에 대처할 가능성이 드러남.

□ 반면 공공조달시장에 대해 특정 유형 기업의 진입이 원활해지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 개척과는 다르므로, 기존 공공조달에 참여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 영향이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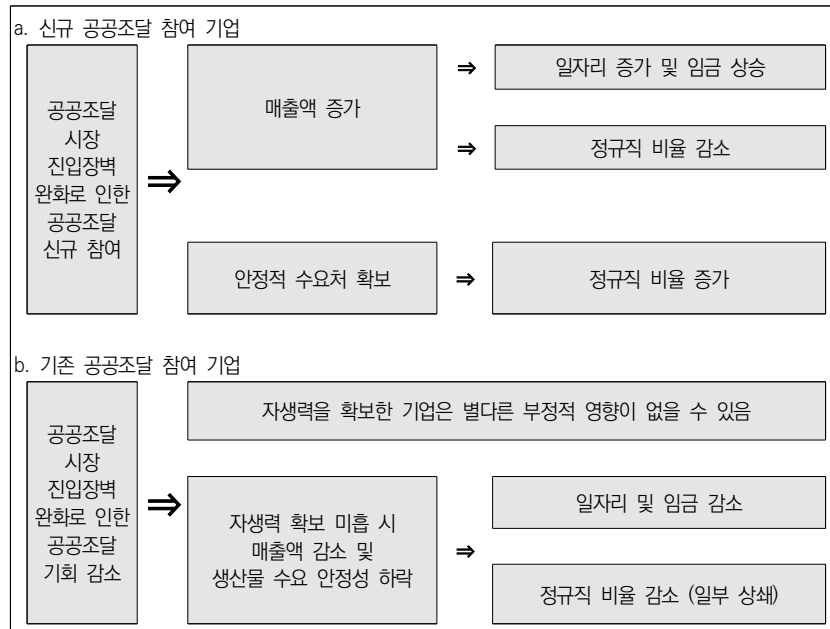
○ 기존 공공조달에 참여하였던 기업 중 이미 자생력을 갖추어 국내 민간 수요 및 해외 수요에 맞춘 제품 공급 및 시장 개척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다른 부정적 영향이 없을 수 있음.

○ 그러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및 생산물 수요 안정성에 있어 타격이 예상되고, 이는 일자리의 양 감소와 더불어 근로자 임금 하락, 정규직 비율 하락 등 일자리의 질 저하 초래 가능

- 다만 <표 4-6>의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이 감소할 때 비정규직 사용이 줄면서 정규직 비율 하락이 상쇄될 가능성은 있음.

□ 지금까지 살펴 본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연계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연계성



□ 결국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문호 확대는 노동시장에 대해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존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자생력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가 순효과의 방향 및 크기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수 있음.

○ 다만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표본에 포함된 창업기업의 평균 정부매출비율은 3.8%에 불과하고, 8,000개 표본기업 중 정부매출이 0보다 큰 기업은 578개로 전체 표본기업 수의 7.2%에 불과하므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기회 확대가 순효과 측면에서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물론 실제로 그러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연구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는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를 중기부 및 창업진흥원과의 협의하에 입수하여 분석에 활용
-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는 8,000개 표본기업에 대해 기업 일반현황 관련 7개, 창업 준비단계 관련 12개, 실행단계 13개, 성장단계 19개, 창업지원정책 관련 4개 등 총 5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내역을 담고 있음.
- 다만 본 연구를 위해 입수한 원자료는 연구 목적과 직접 관련된 항목 일부만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특히 조사 대상 창업기업의 매출구조 중 B2G(정부매출)에 대한 응답 내역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매출 비중 및 유무, 매출액, 그리고 고용성과(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 간 관계가 기업 단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량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것임.
- 다만 일자리의 질 중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통계청 승인통계인 「창업기업실태조사」 자료가 한계를 가지므로, 국내 창업기업을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함.
-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창업벤처기업 공공구매 활성화정책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확인하고자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좌담회를 통한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음.
-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현재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그룹과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그룹을 나누어서 각 1회씩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 공공구매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1회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이 절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따른 고용효과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는데, 여기에는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기선 외(2013), 김유빈 외(2015)], 창업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임길환·정유훈(2014), 이우진 외(2017)],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김수환(2008), 홍충기·김병건(2017)], 혁신조달에 관한 연구[최종화 외(2014), 김대식 외(2016)] 등이 있음.

1.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기선 외(2013)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EU,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정책 간의 연계제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최적가치낙찰제의 실시, 입찰공고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의 노동정책과의 연계, 공공조달과 연계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대한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 및 제재수단의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음.
- 김유빈 외(2015)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시행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고용률 제고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방안으로 인증 및 우선구매 지정을 위한 심사항목의 고용에 대한 평가요소를 개선하는 방안, 기술 및 연구인력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2.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임길환·정유훈(2015)은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현황을 소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기술창업 관련 재정사업의 이원화된 자원배분 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재정사업과 조세지원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창업기업 자금지원 규모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고, 모태펀드의 창업초기기업 지원 및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중 확대가 필요하고, 창업초기기업의 R&D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 제거가 필요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예산감액 조정 및 운영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우진 외(2017)는 창업벤처기업 지원이 기존에는 창업과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재도전, 재투자 단계에 필요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의 활성화, 창업지원 정책의 연계 및 통합, 정책과 창업기업 간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분야별 전문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3.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 김수환(2008)은 10여 가지에 이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 제도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제도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규모별 경쟁제도, 낙찰자결정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

증 및 성능보험제도, 구매지원관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제도 등임.

- 홍충기 외(2017)는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의 기업규모별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조달 제도에 해당하는 공공구매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외사유로 인해 중소기업과 계약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예외사유 조항을 열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조달청 데이터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미국과 같은 중소기업 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법 규정 준수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임.

4. 혁신조달에 관한 연구

- 최종화(2014)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해외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수요 창출, 기획-R&D-사업화의 전 과정 연계 체계 구축, 공급-수요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및 채널 확보, 공공구매시장 진입을 위한 운영원칙 및 평가방식 전환, 공공구매시장 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혁신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김대식 외(2016)는 공공혁신조달의 주요 방법론으로서 혁신적 아이디어 경쟁이 용이하여 EU를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경쟁적 대화절차(competitive dialogue)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① 계약금액이 다소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물품 및 용역과 ② 계약금액과 난이도가 모두 높은 물품과 용역을 나누어서 ①은 단기간(2.5~3.5개월)의 경쟁적 대화를, ②는 장기간(6~7개월)의 경쟁적 대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함.

5. 소결

-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의 관계가 주로 논의가 되었고,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국한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음.
-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일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충분치 않았음.
- 혁신조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혁신조달 일반 및 ‘경쟁적 대화’와 같은 혁신적인 조달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혁신조달정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음.
-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우리나라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

제2장

제도 및 정책

제1절 개관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 창업·벤처기업(이하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음. 하나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정책’(SME policy)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임.
-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SIGMA(2016), OECD

(2018)].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창업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영향을 받게 됨.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정책을 볼 때는 이러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일반을 보면서 동시에 창업벤처기업에 특화된 제도나 정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정책의 중요성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Veiko(201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성장동력은 결국은 혁신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혁신경제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공공조달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조달청에서는 최근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여 혁신성장·경제활력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조달청(2019. 3)]. 창업벤처기업은 기존에 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으로부터의 공공구매는 기술혁신정책과 연관성을 갖게 됨.

□ 이러한 두 가지 배경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별로 나누어서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 첫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중앙조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달청의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본 다음, 셋째, 공공조달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도록 함.

제2절 조달청의 제도 및 정책

1. 벤처나라 운영

- 2016년 8월 기준으로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의 공공조달 납품실적은 중소기업 평균 납품실적 대비 38.2%에 불과하는 등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었음[조달청(2016.10)].
- 조달등록기업의 납품실적은 중소기업은 20.2만 개사, 거래실적은 13.5조 원(0.67억 원/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창업기업은 11.1만 개사, 거래실적은 2.8조 원(0.25억 원/개사)에 불과한 상황이었음(16년 1월~8월, 조달청).
- 이에 공공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주는 등 판로개척을 돕고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를 2016년 10월 12일부터 오픈하였음.
- 벤처나라 운영의 법적 근거로 '벤처나라 지정물품 서비스 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7-5호)이 시행되고 있음.
-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가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신기술, 융합·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자격이 부여됨[조달청(2016.10)].
- 신기술, 융합·혁신 분야는 조달청과 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요건(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벤처나라는 이처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에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9년 4월 현재 스마트폰 살균충전기, 휴대용 3D 프린터기 등 아이디어상품과, 원격 건강관리·응급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 및 융·복합 물품·서비스 등 상품 4,000여 개가 등록되어 있음.
- 벤처나라 등록상품군은 다음과 같이 8개로 나누어져 있음: ① 디지털·가전, ② 컴퓨터·주변기기, ③ 자동차·공구·기계, ④ 전문장비, ⑤ 건강·의료, ⑥ 교육, ⑦ 시스템·소프트웨어, ⑧ 기타
-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첫째는 유관기관에서 기술·품질 평가를 거쳐 우수제품을 추천하면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대상(우수 창업벤처기업 상품)으로 지정하는 방식임.
- 현재 추천기관은 산업부, 중기청, 조달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6개 기관이며 이들이 추천한 제품(NEP, 산업융합품목, 성능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인증상품, 조달청 새싹기업 제품 등)이 대상이 됨.
- 2019년 말까지 추천기관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조달청에도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직접 발굴해 벤처나라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부여할 계획임[조달청(2019. 4)].
-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임. 이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기술력·차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심사받아야 함. 그러나 심사기준이 엄격하여 벤처나라 등록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조달청은 ‘제한적 오픈마켓’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음. 이 제도는 최소한의 품질 확인 절차를 거쳐 1년간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제품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됨[조달청(2019. 4)].
- 등록기업은 5년간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홍보하게 되고, 전자견적·주문(계약)등을 거쳐 납품을 할 수 있음[조달청(2016.10)].

- 등록기업은 선정 후 3년간 벤처나라에서 상품 등록 및 거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할 수 있음. 2천만 원 미만 소액수의계약은 전자주문의 대상이며, 그 외 수의계약은 전자계약의 대상임.
- 벤처나라 등록 상품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문(계약체결)하여 구매하는 방식임. 이러한 점에서 조달청과의 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품을 수요기관이 납품 요구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는 차이가 있음.
- 벤처나라를 통한 거래규모는 2.2억 원(2016년) → 52.2억 원(2017년) → 128억 원(2018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리고 2019년 4월 현재 30개사, 286개 상품이 벤처나라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체결 등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진출함[조달청(2019. 4)].
- 등록 상품의 가격·품질을 조달청이 사전·사후 검토하여 이용기관의 직접 거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음[조달청(2016.10)].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상품검색 → 견적 → 주문 또는 계약체결 →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가능함.
- 조달청은 벤처나라 구매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벤처나라 물품 구매 담당과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매를 촉진할 계획임[조달청(2019. 4)].
- 조달청은 기존 방식보다 쉽게 검색하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처음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물품 구매 동영상' 등 이용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임.
- 조달청은 벤처나라 제품별 거래 현황 정보를 제공해 구매 의사결정을 돕고, 벤처나라 구매실적이 우수한 수요기관 직원 표창 확대 등으로 구매를 유도할 계획임.

- 벤처나라 지정부터 상품 등록 및 판매, 종합쇼핑몰로의 진출 등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진입·성장 전(全)단계에 걸친 전문 컨설팅 상담을 지원하는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조달청(2019. 4)].
- 조달청은 벤처나라 지정부터 상품 등록 및 판매, 종합쇼핑몰로의 진출 등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진입·성장 전(全)단계에 걸친 전문 컨설팅 상담을 지원하는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조달청 본청은 창업벤처기업 조달 진출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각 지방청(11개)에 전담관을 두고, 전 직원은 1인 2사를 맡아 밀착 지원하는 형태의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임.

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 조달청은 2019년 5월 17일 공공에 활용될 수 있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물품 및 서비스)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수요기관이 시제품 사용 후 시제품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계획’을 공고함(조달청 공고 제2019-79호).
- 제안분야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미세먼지 저감 분야임.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은 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임.
-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는 안전, 환경, 건강, 복지 등임.
- 미세먼지 저감 분야는 배출원 감시, 오염원 관리, 실내·외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측정 분석 등임.
- 대상제품은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솔루션(제품 및 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안임.

- 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는 다음과 같음.
 - ①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②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 ③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 상용화 이전 단계는 ① 연구개발 성과 달성을 위한 시제품 거래, ②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거래이거나 제품 국내 출시 후 1년 이내를 말함.
- 신청자는 제안분야에 부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 신청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전용실시권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단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에도 참가 가능하나 시제품 지정 심사 전까지 권리를 획득하여야 함.
-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제안공모) 나라장터(조달청홈페이지, 벤처나라)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함.
- (사전검토) 지원 자격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통과된 제안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성, 사업성 등 기술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서 전문기관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함.
- (테스트 기관 연계) 사전자격이 통과된 제안서는 수요기관에 공개되며,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테스트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 후 구매계약으로 전환하며, 수요기관은 테스트 신청 후 조달청과 테스트 이행에 대한 업무협약을 진행함.
- (계약협상·제결) 테스트 계획서에서 제시된 비용 산출내역에 따라 조달

청 계약담당자와 가격 및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 (테스트 진행·확산) 테스트 수행 후 수요기관에서는 테스트결과를 통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해당 기업에 제시하고 우수한 결과는 구매가 확대 되도록 지원함.

3.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상용품·규격화된 제품 위주로 거래하여 혁신조달업체의 진입장벽이 높고 혁신제품의 등록·거래에 어려움이 있음[조달청(2019. 5)].

- 예를 들어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의 경우 동일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기에는 제약이 있음.

-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혁신수요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제품 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혁신제품의 거래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았음.

-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최근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힘[조달청(2019. 5)].

- 동 플랫폼은 혁신조달과 관련된 수요·공급을 연계하고 혁신제품의 자유로운 등록·거래가 가능한 열린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됨.

- 이를 통해 혁신제품의 수요·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연계를 지원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함.

- 혁신조달 플랫폼은 ①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및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② 혁신제품전용몰, ③ 경쟁적 대화방

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됨.

- 첫째, 조달청은 수요공급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부부처의 수요와 기업의 공급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를 통해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수요와 공급 간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임[조달청(2019. 5)].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로 추진하던 공공 연구개발(R&D)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함.
- 둘째, 조달청은 혁신제품전용몰을 통해 각 부처 우수R&D제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 벤처나라제품 등을 열린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임[조달청(2019. 5)].
- 그간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플랫폼으로 온라인화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비교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구매편의를 제고할 계획임.
- 셋째, 조달청은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 제도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플랫폼에서 구현하여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조달청(2019. 5)].
- 위와 같은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은 비록 창업벤처기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창업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되는 제도 및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제3절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 및 정책

1.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 향상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임[중소벤처기업부(2019. 4)].
- 중앙정부 46개, 지자체(교육청, 기초단체 포함) 260개, 공공기관 339개, 지방 공기업 151개, 특별법인(농협, 수협, 상공회의소 등) 6개, 지방 의료원 35 등 총 837개 기관이 의무구매기관임.
- 법령에 따라 정해진 중소기업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50% 이상 구매
 -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물품 구매의 10% 이상 구매
 - 여성기업제품: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5%,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 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
-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 통계는 다음과 같음.

〈표 2-1〉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중소벤처기업부(2019.4)]

구분		2018년도 실적			2019년도 계획		
		중소기업 물품 구매(A)	기술 개발 제품 구매(B)	구매 비율 (C=B/A)	중소기업 물품 구매(A)	기술 개발 제품 구매(B)	구매 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합계	21,831,605	3,316,173	15.2%	21,059,543	3,159,268	15.0%
	공공기관 합계	11,309,185	1,211,489	10.7%	11,566,878	1,404,041	12.1%
	총계	33,142,757	4,527,726	13.7%	32,626,421	4,563,309	14.0%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상향할 계획임[관계부처합동(2017.10), 중소벤처기업부(2019.4)].
- 현재 중소기업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이 50%인데 이를 70%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임.
- 현재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이 10%인데 이를 15%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임.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창업기업 및 판로개척 단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로서 2018년에 도입됨[중소벤처기업부(2019.4)].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① 공고형 과제는 정기적인 공고를 통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고, 구매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유형이며, ② 소액과제는 상시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모집하고 서면평가,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유형임[중소벤처기업부(2019.5)].
- 시범구매 선정 제품은 2018년에 총 126개 제품이 선정된 이후, 2019년 4월에 45개 제품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선정제품이 총 171개로 확대되었으며,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도 최초에 6개 기관으로 시작되었으나 2019년에 지자체 등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305개로 확대되었음[중소벤처기업부(2019.5)].
- 중소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의 경우 2018년 268억 원, 2019년 1~4월은 231억 원을 기록하였음. 시범구매 참여 기업과 공공기관의 숫

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구매실적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중소벤처기업부(2019.5)].

3. 창업기업의 생산설비보유 요건 완화

- 과거에는 공공조달 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 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을 부여 하도록 함[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4. 직접생산확인제도 수수료 면제제도 도입

-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업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의 2].

제4절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제도 및 정책

-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제도 및 경쟁적 대화 방식의 도입 등은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및 지방계약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공통되는 내용임. 이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함.

1.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 기획재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집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를 위하여 창업벤처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함(국가계약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2.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현행 공공조달은 기성제품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였음[관계부처합동(2017.10)].
- 발주기관보다 민간의 기술·지식이 월등한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목적물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3).
- 발주기관은 조달목적·주요기능만 제시하고,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 → 발주기관-업체 간 협의를 통해 제안서 보완·완성 → 제안서를 평가,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낙찰됨.
- 경쟁적 대화방식의 근거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3.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창업기업이 R&D사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판로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중소기업부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의계약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구매확산 효과가 미흡하였음[관계부처합동(2017.10)].
- 창업기업 등의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였음.
- 과거에는 중기부 R&D에 한해 기술개발 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 가능하였으나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개선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아목).

4.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

- 과거에는 창업벤처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도 실적제한경쟁이 가능하였음. 계약목적물의 1/3배 이내, 필요시 1배까지 실적제한을 허용했음.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억 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을 폐지하였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5. 창업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 경감

- 제안서 작성비용, 실적발급 절차 등 입찰참여를 위한 비용과 절차가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2017.10)].
- 용역계약 등의 경우 제안서 제작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온라인 계약실적 발급시스템이 없어 실적발급을 위해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입찰참여 중소·벤처업체 비용 경감을 위해 제안서 제출방법 및 실적발급 시스템을 개선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적 제출을 원칙으로 규정함. 전자파일 제출이 곤란한 경우(예 : CAD 파일 등)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방문제출을 최소화하였음.
- 계약실적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토록 의무화함.

제5절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주관부처	정책내용	근거법령
조달청	☐ 벤처나라 운영 ○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에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구축함.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내 신산업 및 신생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발굴, 추천한 후보 상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최종 심사를 거쳐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선정함. ○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벤처나라-나라장터 연계를 통한 공공기관의 구매절차 지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키워드로 연관 검색, 기타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등이 이루어짐.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 공공에 활용될 수 있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물품 및 서비스)을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수요기관이 시제품 사용 후 시제품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 지원 ☐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 동 플랫폼은 혁신조달과 관련된 수요·공급을 연계하고 혁신제품의 자유로운 등록·거래가 가능한 열린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됨.	벤처나라 지정물품 서비스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지정공고(조달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 상향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50%에서 70%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할 계획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여 창업기업 및 판로개척 단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임. ☐ 창업기업의 설비보유 요건 완화 ○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 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직접생산확인제도 수수료 면제제도 도입 ○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업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금액을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의 2

주관부처	정책내용	근거법령
기획재정부	□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 1억 원 미만 물품과 용역의 계약에는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여 이들의 판로를 지원 □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함. 이 방식은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임. □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창업기업이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R&D 결과물에 대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함. □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억 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을 폐지하였음. □ 창업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 경감 ○ 입찰참여 중소·벤처업체 비용 경감을 위해 제안서 제출방법 및 실적발급 시스템을 개선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43조의 3, 제26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3장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특성

제1절 일자리의 양

- 본 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입수한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양적 고용지표를 들여다보기로 함.
- 창업기업의 고용지표를 표본기업 전체 및 업종별로 살펴보았는데, 업종별 그룹은 입수한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두 자리 숫자로 기재된 내역을 기반으로 기술기반 제조업, 기술기반 서비스업, 기타 산업 등 세 그룹으로 나누었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분류한 기술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은 <표 3-1>과 같음.

〈표 3-1〉 기술기반 창업 업종 분류 기준

제조업 부문(중분류 24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중분류	업종	중분류	업종
(C) 10	식료품 제조업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J) 61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N) 75	사업지원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P) 85	교육서비스업
(C)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Q) 86	의료 및 보건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Q) 87	사회복지 서비스
(C) 24	1차금속 제조업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b), p.30 표 1-6.

- 〈표 3-2〉는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기업 전체 및 업종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 창업기업에 대해 총 고용인원 및 고용형태별, 성별, 직군별, 연령대별 종사자 수의 산술평균을 제시함.

〈표 3-2〉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 업종별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기술기반 제조업 평균	기술기반 서비스업 평균	기타산업 평균
총 고용인원(명)		4.95	7.40	6.35	3.62
고용형태별 인원 (명)	정규직	4.38	6.71	5.63	3.16
	비정규직	0.57	0.69	0.72	0.46
성별 인원(명)	남성	3.02	5.76	3.26	2.35
	여성	1.93	1.64	3.10	1.27
직군별 인원(명)	경영관리	1.97	3.05	2.37	1.51
	연구개발	0.20	0.20	0.38	0.09
	일반사무	1.17	0.87	2.05	0.68
	기능생산	0.73	2.15	0.54	0.58
	영업판매	0.43	0.74	0.36	0.42
	단순노무	0.45	0.39	0.65	0.34
연령대별 인원(명)	20대이하	0.37	0.45	0.62	0.20
	30대	1.17	1.73	1.75	0.71
	40대	1.68	2.65	2.23	1.15
	50대	1.26	2.08	1.34	1.05
	60대이상	0.47	0.50	0.41	0.51
기업 수 (개)		8,000	843	2,728	4,42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 전체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4.95명인데, 업종별로 나눠보면 기술기반 제조업, 기술기반 서비스업, 기타 산업의 순으로 종사자 수 평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산업의 경우 생계형 창업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사자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고용형태별로는 표본 전체 및 업종별 평균에서 모두 정규직 인원이 비정규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종사자 수에 있어 표본기업 전체 평균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고, 업종별로는 기술기반 제조업에서 그 차이가 크고 기술기반 서비스업에서는 남녀 종사자 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직군별 종사자 수에 있어 표본기업 전체에서는 경영관리와 일반사무 직

군의 수가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술기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에서는 기능생산직 종사자 수가 경영관리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종사자 수에 있어 표본 전체 평균은 40대 종사자 수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50대와 30대 순으로 나타나는데, 기술기반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에서는 40대 다음으로 30대 종사자가 50대보다 더 많은 양상을 나타냄.
-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의 고용지표를 3개 업종별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조달대상, 즉 물품, 용역, 공사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표 3-3>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조달대상을 물품, 용역, 공사로 분류한 내역을 제시함.
- 이처럼 조달대상별 기준으로 나누어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고용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인 방식은 물론 아니나, 본 연구의 수요처 중 공공조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이처럼 물품, 용역, 공사로 분류하여 각각 해당 창업기업의 일자리 특성을 들여다보고 비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

<표 3-3> 조달대상 분류 기준

물 품		용 역	
중분류 업종		중분류 업종	
01	농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02	임업	36	수도사업
03	어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06	금속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10	식료품 제조업	51	항공 운송업
11	음료 제조업	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12	담배 제조업	55	숙박업

〈표 3-3〉의 계속

물 품		용 역	
중분류 업종		중분류 업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56	음식점 및 주점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8	출판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60	방송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1	통신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3	정보서비스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4	금융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5	보험 및 연금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8	부동산업
24	1차금속 제조업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0	연구개발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1	전문서비스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5	교육서비스업
32	가구 제조업	86	보건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95	수리업
공 사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 업종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자료: 연구자 직접 작성.

○ 〈표 3-3〉에 제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기업 전체

및 조달대상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 및 고용형태별, 성별, 직군별, 연령대별 종사자 수의 산술평균이 <표 3-4>에 제시됨.

<표 3-4>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 조달대상별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물품 조달 기업 평균	용역 조달 기업 평균	공사 조달 기업 평균
총 고용인원(명)		4.95	5.41	4.81	4.89
고용형태별 인원 (명)	정규직	4.38	4.93	4.24	4.01
	비정규직	0.57	0.48	0.57	0.88
성별 인원(명)	남성	3.02	3.97	2.65	3.78
	여성	1.93	1.44	2.16	1.11
직군별 인원(명)	경영관리	1.97	2.30	1.92	1.35
	연구개발	0.20	0.14	0.21	0.36
	일반사무	1.17	0.72	1.34	0.85
	기능생산	0.73	1.33	0.50	1.16
	영업판매	0.43	0.60	0.38	0.39
	단순노무	0.45	0.33	0.46	0.77
연령대별 인원(명)	20대 이하	0.37	0.30	0.39	0.42
	30대	1.17	1.19	1.18	1.02
	40대	1.68	1.87	1.62	1.61
	50대	1.26	1.52	1.17	1.35
	60대 이상	0.47	0.53	0.45	0.48
기업 수(개)		8,000	1,810	5,660	53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 전체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4.95명인데, 조달대상별로 나눠보면 물품, 공사, 용역의 순으로 종사자 수 평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는 표본 전체 및 조달대상별 평균에서 모두 정규직 인원이 비정규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공사 조달 기업의 경우 건설업종 특성상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성별 종사자 수에 있어 표본기업 전체 평균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고, 대상별로는 물품 조달 및 공사 조달 기업에서 그 차이가 크고 용역 조달 기업에서는 남녀 종사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직군별 종사자 수에 있어 표본기업 전체에서는 경영관리와 일반사무 직군의 수가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품 및 공사 조달 기업에서는 기능생산직 종사자 수가 경영관리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종사자 수에 있어 표본 전체 평균은 40대 종사자 수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50대와 30대 순으로 나타나는데, 조달대상별로 보더라도 연령 분포에 있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제2절 일자리의 질

- 본 절에서는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및 자체적으로 1,020개 창업기업에 대해 실시한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질적 고용지표를 들여다보기로 함.
- <표 3-5>는 표본기업 전체 및 업종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 창업기업에 대해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의 산술평균을 제시함.
- <표 3-5>에서 정규직 비율, 여성 종사자 비율 및 30대 이하 종사자 비율은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고,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속기간, 산업재해율, 4대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는 1,020개 창업기업에 대해 실시한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 「창업기업실태조사」에 포함된 표본 창업기업 전체의 정규직 비율 평균은 90%에 육박하고, 업종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창업기업의 고용의 질: 업종별

A.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n=8,000)	기술기반 제조업 평균 (n=843)	기술기반 서비스업 평균 (n=2,728)	기타산업 평균 (n=4,429)
정규직 비율(%)	89.87	88.56	90.64	89.64
여성 종사자 비율(%)	40.24	16.05	49.58	39.08
30대 이하 종사자 비율(%)	25.96	26.70	34.35	20.58
B. 자체 설문조사 자료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n=1,020)	기술기반 제조업 평균 (n=176)	기술기반 서비스업 평균 (n=294)	기타산업 평균 (n=550)
연간 총급여(천 원)	33,098.04	34,134.64	33,146.61	32,736.6
주당 근로시간(시간)	40.95	41.91	40.14	41.08
근속기간(월)	37.11	41.57	36.33	36.11
연간 산업재해율(%)	0.37	0.23	0.26	0.48
고용보험가입률(%)	92.42	95.17	89.41	93.14
건강보험가입률(%)	97.09	98.64	97.09	96.60
국민연금가입률(%)	95.95	97.57	96.34	95.23
산재보험가입률(%)	96.47	99.43	93.54	97.0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여성 종사자 비율은 창업기업 전체에서 평균 40% 남짓인데, 기술기반 서비스업에서는 평균 50%에 육박하고 기술기반 제조업에서는 여성 비율이 16%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관련 정책지원에서 흔히 청년 연령대의 기준이 되는 30대 이하 종사자의 비율은 표본 창업기업 전체에서 평균 26% 가량 되는데, 기술기반 서비스업에서 평균 34% 남짓으로 나타나고 기타 산업에서는 20% 남짓에 그침.
- 창업기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에 포함된 표본기업 전체의 연간 총급여 평균은 3,300만 원 남짓인데, 기술기반 제조업 평균이 타 업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나 큰 차이는 없음.
-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표본기업 전체에 대해 41시간 가량으로 나타나며, 업종별로는 기술기반 제조업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나 타 업종에 비

해 큰 차이는 아님.

- 표본 창업기업 전체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 1개월 남짓인데, 기술기반 제조업에서 타 업종에 비해 근속연수가 평균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산업재해율, 즉 총 근로자 중 재해자 수의 비율은 창업기업 전체에서 평균 0.37%로 나타나는데, 기술기반 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기타 산업에서 재해율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
- 4대보험 가입률은 표본 내 창업기업 전체 평균이 모두 92%를 넘고 있으며, 기술기반 제조업의 경우 4대보험 모두에서 가입률 평균이 95%인 것으로 나타나나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률 평균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6>은 표본기업 전체 및 조달대상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 창업기업에 대해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의 산술평균을 제시함.

<표 3-6> 창업기업의 고용의 질: 조달대상별

A.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n=8,000)	물품 조달 평균 (n=1,810)	용역 조달 평균 (n=5,660)	공사 조달 평균 (n=530)
정규직 비율(%)	89.87	90.78	89.80	87.47
여성 종사자 비율(%)	40.24	24.54	46.55	27.25
30대 이하 종사자 비율(%)	25.96	25.40	26.47	22.44
B. 자체 설문조사 자료				
변수(단위)	창업기업 전체 평균 (n=1,020)	물품 조달평균 (n=279)	용역 조달 평균 (n=651)	공사 조달 평균 (n=90)
연간 총급여(천 원)	33,098.04	33,677.35	32,791.45	33,512.28
주당 근로시간(시간)	40.95	41.78	40.56	41.21
근속기간(월)	37.11	39.80	35.63	39.53
연간 산업재해율(%)	0.37	0.58	0.20	0.96
고용보험가입률(%)	92.42	94.78	90.67	97.75
건강보험가입률(%)	97.09	98.38	96.23	99.31
국민연금가입률(%)	95.95	97.08	95.31	97.09
산재보험가입률(%)	96.47	98.92	95.08	98.8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결과.

- 「창업기업실태조사」에 포함된 표본 창업기업 전체의 정규직 비율 평균은 90%에 육박하고, 공사 조달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여성 종사자 비율은 창업기업 전체에서 평균 40% 남짓인데, 용역 조달 기업에서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나 물품 및 공사 조달 기업에서는 낮게 나타남.
- 창업 관련 정책지원에서 흔히 청년 연령대의 기준이 되는 30대 이하 종사자의 비율은 표본 창업기업 전체에서 평균 26% 가량 되는데, 공사 조달 기업에서 다소 낮게 나타남.
- 창업기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에 포함된 표본기업 전체의 연간 총급여 평균은 3,300만 원 남짓인데, 조달대상별로 큰 차이는 없음.
-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표본기업 전체에 대해 41시간 가량이며, 역시 조달대상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표본 창업기업 전체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 1개월 남짓인데, 물품 및 공사 조달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길고 용역 조달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산업재해율은 창업기업 전체에서 평균 0.37%로 나타나는데, 다른 지표들과 달리 조달대상 그룹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공사, 물품, 용역의 순으로 산업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와 용역 간의 재해율 차이는 다섯 배 가까이에 달함.
- 4대보험 가입률은 표본 내 창업기업 전체 평균이 모두 92%를 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사 조달 기업의 가입률이 가장 높은 편이고 용역 조달 기업의 가입률이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고용 변화 추정

□ 본 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진흥원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는 「창업기업실태조사」의 2018년도 조사 결과 원자료를 중기부 및 창업진흥원과의 업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계 부처가 추진 중인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 고용의 양 및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함.

□ 이때 「창업기업실태조사」에 포함된 것보다 폭넓은 고용의 질 관련 지표에 대한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의 기초가 되는 창업기업의 정책효과에 대한 예측치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와 함께 활용함.

제1절 창업기업의 매출구조, 매출액 및 고용지표 간 관계

1. 분석 자료

가. 창업기업실태조사

- 「창업기업실태조사」는 2013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처음 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사업 개시 시점에서 7년이 지나지 않은 전국의 모든 기업체가 모집단을 이룸.
- 2018년도 조사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중 설립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이때 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체 수는 총 203만 987개에 달함(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9b, pp.27-28 표 1-5).
-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의 표본 크기는 전국 17개 시도 소재 8,000개 기업체임.
- 「창업기업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기업 일반현황 관련 7개, 창업 준비 단계 관련 12개, 실행단계 13개, 성장단계 19개, 창업지원정책 관련 4개 등 총 55개에 달하는데, 본 연구를 위해 중기부 및 창업진흥원과의 협의하에 입수한 원자료는 연구 목적과 직접 관련된 항목 일부만을 포함함.
- 본 연구를 위해 입수하여 활용 가능한 변수는 설립연월, 업종, 창업자 성별 및 출생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 매출구조(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매출 비율, 중소기업 대상 비율, B2C 비율, B2G 비율 등), 고용지표(전체 인원, 고용형태별 인원, 성별 인원, 직군별 인원, 연령대별 인원 등), 벤처기업 지정 여부 및 인증연도 등임.

나. 자체 설문조사

- 관계 부처가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할 때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 및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업들이 예측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창업기업실태조사」가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설문 항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양 관련 변수에 비해 질 관련 항목은 고용형태 관련 설문 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역시 기타 일자리 질 변수(임금 수준, 근로시간, 근속연수, 산업재해율, 4대보험 가입률 등)에 대한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일부를 입수하여 활용하는 것에 더해 전문 조사업체가 위탁 수행한 별도 자체 설문조사를 1,020개 표본 창업기업에 대해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였음.
- 자체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조사 대상은 이러한 기업의 CEO 또는 재무담당자임.
-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로서, 조사업체에서 사전 컨택 후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4주간임.
- 자체 설문조사 대상 창업기업 표본 추출 방식은 최대한 「창업기업실태조사」와 유사한 방법을 따르고자 하였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72개 중분류 산업을 기술기반 업종과 이외 업종으로 1차 분류하고, 1차 분류 내에서 각각 39개(기술기반 업종), 33개

(이외 업종) 산업별로 층화하여 조사업체가 보유한 기업 명부 내에서 무작위 추출함.

- 최종 유효표본 크기는 총 1,020개 기업으로서, 기술기반 업종에서 470개, 이외 업종에서 550개 기업이 추출됨.

○ 다만 창업기업실태조사의 경우 표본 크기가 8,000개 기업으로서 표본 추출 시 중분류 업종뿐만 아니라 7개 업력 구간까지 감안하여 이중 층화 방식을 택하였고, 본 연구의 자체 설문조사의 경우 목표 표본 크기가 1,000개 기업 안팎으로 작은 관계로 층화 표본 추출 시 중분류 업종만을 고려했다는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해 아래 기초통계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 자체 설문조사 표본기업의 연차 분포가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고용인원, 매출액, 정부매출 비율 등에 있어서도 더 높은 양상이 나타남.

- 다만 기술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기타 산업 등으로 분류한 산업별 비중은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 및 자체 설문조사 표본 사이에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도 두 조사 표본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분석 결과

가. 기초통계

□ <표 4-1>과 <표 4-2>는 각각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에 포함된 모든 창업기업, 그리고 이들 기업 중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핵심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 <표 4-1>에 따르면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의 표본이 된 8,000개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5명 가까이 되고, 중윗값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을 보여줌.

○ 정규직 비율은 소규모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듯 평균 90%에 육박하여

매우 높음.

〈표 4-1〉 기초통계 (창업기업실태조사, 전체 창업기업)

변수(단위)	관측 수	산술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총 고용인원(명)	8,000	4.95	3	9.75
정규직 비율(%)	7,890	89.87	100	23.78
매출액(천 원)	8,000	920,946.9	218,000	3,803,125
정부매출 비율(%)	8,000	3.82	0	17.55
정부매출 유무 더미	8,000	0.07	0	0.26
기업 연령	8,000	3.28	3	1.94
기술기반 제조업 더미	8,000	0.11	0	0.31
기술기반 서비스업 더미	8,000	0.34	0	0.47
기타 산업 더미	8,000	0.55	1	0.50
창업자 여성 더미	8,000	0.27	0	0.45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	8,000	46.79	46	9.71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 표본 창업기업의 2016년 연간 매출액 평균은 9억 2,000만 원 남짓이고, 중윗값은 2억 1,800만 원으로 나타나 재무지표를 보더라도 평균적인 규모가 상당히 작음.
- 정부대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비중이 7%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액 중 정부대상 매출 비중이 평균 3.82%로 매우 낮게 나타나,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둔다면 기존에 정부대상 매출이 없던 창업기업의 정부대상 판로 개척을 돕고 정부대상 매출 비중이 일정 부분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업 연령은 평균적으로 창업 3년차를 살짝 웃돌며, 기술기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이 45%(기술기반 제조업 11%, 기술기반 서비스업 34%), 그 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55%인 것으로 나타남.
- 표본 창업기업의 창업자가 여성인 비율은 27%이고 설립 당시 창업자의 평균 연령은 46세에서 47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 기초통계 (창업기업실태조사, 벤처인증기업)

변수(단위)	관측 수	산술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총 고용인원(명)	123	10.36	5	24.33
정규직 비율(%)	122	94.61	100	17.54
매출액(천 원)	123	1,444,008	368,000	3,013,835
정부매출 비율(%)	123	3.74	0	16.86
정부매출 유무 더미	123	0.09	0	0.29
기업 연령	123	3.65	3	1.81
기술기반 제조업 더미	123	0.32	0	0.47
기술기반 서비스업 더미	123	0.56	1	0.50
기타 산업 더미	123	0.12	0	0.33
창업자 여성 더미	123	0.08	0	0.27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	123	44.02	43	6.5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 〈표 4-2〉에 따르면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의 표본이 된 8,000개 창업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123곳의 평균 고용인원은 10명 남짓이고, 중윗값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가 역시 작기는 하나 창업기업 전체 평균보다는 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남.
- 정규직 비율은 평균 94%를 넘어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남.
- 표본기업 중 벤처기업의 2016년 연간 매출액 평균은 14억 4,000만 원 남짓이고, 중윗값은 3억 6,800만 원으로 나타나 전체 창업기업 평균보다는 확연히 높음.
- 정부대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9% 가량에 불과하고 정부대상 매출 비중은 평균 3.74%로 전체 창업기업 평균과 별다른 차이 없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둔다면 정부대상 판로 개척을 돕고 정부대상 매출이 일정 부분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임.
- 기업 연령은 평균적으로 창업 3년차와 4년차 사이에 도달해 있으며, 기술기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비중이 88%(기술기반 제조업 32%, 기술기반 서비스업 56%), 그 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12%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창업기업에 비해서는 기술기반 업종에 속하는 기업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됨.

○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여성인 비율은 8%에 불과하여 창업기업 전체에 비해 확연히 낮고, 설립 당시 창업자의 평균 연령은 44세 가량으로 전체 창업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다음으로 <표 4-3>과 <표 4-4>는 각각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자체 설문조사에 포함된 모든 창업기업, 그리고 이들 기업 중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핵심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표 4-3> 기초통계 (자체 설문조사, 전체 창업기업)

변수(단위)	관측 수	산술평균	중윗값	표준편차
총 고용인원(명)	1,020	17.53	9	36.66
1인당 연간 총급여(천 원)	1,012	33,098.04	30,000	9,015.77
주당 근로시간(시간)	1,020	40.95	40	4.53
근속연수(월)	1,020	37.11	36	15.16
연간 산업재해율(%)	1,020	0.37	0	2.76
고용보험 가입 비율(%)	1,020	92.42	100	23.83
건강보험 가입 비율(%)	1,020	97.09	100	13.17
국민연금 가입 비율(%)	1,020	95.95	100	15.13
산재보험 가입 더미	1,020	0.96	1	0.18
연간 매출액(천 원)	987	4,461,989	1,600,000	8,889,000
정부매출 비율(%)	1,020	16.12	0	32.85
정부매출 유무 더미	1,020	0.26	0	0.44
기업 연령	1,020	6.66	7	1.21
기술기반 제조업 더미	1,020	0.17	0	0.38
기술기반 서비스업 더미	1,020	0.29	0	0.45
기타 산업 더미	1,020	0.54	1	0.50
창업자 여성 더미	1,020	0.16	0	0.37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	1,005	47.19	47	8.96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4-3>에 따르면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자체 설문조사에 응한 1,020개 표본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이고, 중윗값은 9명인 것으로 나타나, <표 4-1>에서 2018년도 「창업기업실태조사」의 표본이 된 8,000개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5명 가까이 되고 중윗값이 3명이

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남.

- 자체 설문조사 1,020개 표본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는 평균 3,300만 원 남짓이고 중위값은 3,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41시간 가량이고 중위값은 40시간이고, 평균 근무연수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37개월 남짓에 중위값은 36개월이며, 연간 산업재해율 평균은 0.37%로 나타남.
-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은 최소 92%를 넘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체 설문조사에 응한 1,020개 표본 창업기업의 연간 매출액 평균이 44억 원 남짓, 중위값이 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표 4-1>에서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 창업기업 8,000곳의 2016년 연간 매출액 평균이 9억 2,000만 원 남짓, 중위값은 2억 1,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체 설문조사 표본기업의 정부매출 비율은 평균 16.12%로 앞서 창업기업 실태조사 표본기업의 정부매출 비율이 평균 3.82%였던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정부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비율도 26%로 창업기업 실태조사 표본에 나타난 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체 설문조사 표본기업의 연령 평균이 6.66년차로 앞서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기업의 연령이 평균 3.28년차였던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처럼 두 조사 표본 간에 고용인원, 매출액, 정부매출 비율 등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됨.
 -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창업기업실태조사와는 달리 최신 기업체 정보가 수록된 명부 확보가 어려워 조사 표본에 연차가 낮은 기업이 포함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더불어 표본 추출 시 창업기업실태조사가 중분류 업종에 더해 업력까지 감안하여 이중 층화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자체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관계로 중분류 업종만을 기준으로 표본 추출을 실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자체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기술기반 제조업이 17%, 기술기반 서비스업이 29%, 기타 산업이 54%로 나타나, 앞서 살펴 본 창업기업 실태조사 표본기업 중 기술기반 제조업이 11%, 기술기반 서비스업이 34%, 그 외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55%였던 것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자체 설문조사 표본기업의 창업자가 여성인 비율은 16%로 앞서 창업기업 실태조사 표본기업의 여성 창업자 비중이 27%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낮고,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에는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4-4〉 기초통계(자체 설문조사, 벤처인증기업)

변수(단위)	관측 수	산술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총 고용인원(명)	108	18.39	13	20.39
1인당 연간 총급여(천 원)	108	35,205.92	35,000	6,576.96
주당 근로시간(시간)	108	41.27	40	3.39
근속연수(월)	108	39.59	36	14.36
연간 산업재해율(%)	108	0.08	0	0.61
고용보험 가입 비율(%)	108	96.11	100	15.42
건강보험 가입 비율(%)	108	99.33	100	5.09
국민연금 가입 비율(%)	108	98.65	100	6.60
산재보험 가입 더미	108	0.97	1	0.17
연간 매출액(천 원)	107	4,916,211	2,000,000	7,942,859
정부매출 비율(%)	108	19.81	0	32.17
정부매출 유무 더미	108	0.42	0	0.50
기업 연령	108	6.69	7	1.24
기술기반 제조업 더미	108	0.40	0	0.49
기술기반 서비스업 더미	108	0.50	0.50	0.50
기타 산업 더미	108	0.10	0	0.30
창업자 여성 더미	108	0.18	0	0.38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	108	43.92	44	6.94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4-4〉에 따르면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자체 설문조사의 표본 창업기업 1,020곳 중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108곳의 평균 고용인원은 18

명 남짓이고, 중윗값은 13명인 것으로 나타나, <표 4-3>에 제시된 창업 기업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이어서 <표 4-4>에 제시된 결과를 <표 4-3>과 비교해 보면, 자체 설문 조사 표본 중 벤처인증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전체에 비해 1인당 연간 총급여의 평균이 더 높고,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유사하며, 평균 근속연수가 다소 높고 연간 산업재해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벤처인증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이 창업기업 전체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연간 매출액 평균 및 정부매출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며, 기업 연령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업종 구성은 벤처인증기업의 90%가 기술기반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에 속하여 창업기업 전체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자가 여성인 비율은 벤처인증기업이 약간 더 높고 설립 당시 창업자 연령은 벤처기업이 창업기업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나. 총 고용인원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대상 매출 유무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음.
-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에서 동일 기업이 두 시점 이상에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를 반영하여 OLS를 통한 분석을 수행함.
- 창업기업실태조사 원자료에 포함된 변수인 정부대상 매출 비율이 아닌 정부대상 매출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를 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두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때 매출 유무 더미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매출 비율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기 때문임.¹⁾
 - 이는 창업기업의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정부대상 매

1) <표 4-5>에 제시된 모형에 설명변수로 정부매출 비율을 추가한 모형의 분석 결과는 연구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

출이 있는지 여부이고, 일단 정부대상 판로가 개척되면 정부대상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다른 추가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표 4-5>의 모형1은 설명변수로 핵심변수인 매출액과 정부매출유무더미만을 포함한 모형이고, 모형2는 여기에 기업연령 및 업종 변수를 추가 통제한 모형이며, 모형3은 창업자 성별 및 창업 당시 연령 변수까지 함께 통제한 모형이고, 모형4는 벤처기업인증더미까지 모두 통제한 모형임.
- 다만 OLS 분석 결과이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식별할 수는 없고 단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분석으로 보아야 함.

<표 4-5> 창업기업의 총 고용인원,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종속변수 : 총 고용인원(명)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2.37*** (0.07)	2.31*** (0.07)	2.31*** (0.07)	2.31*** (0.07)
정부매출유무더미	1.79*** (0.39)	1.79*** (0.39)	1.78*** (0.39)	1.77*** (0.39)
기업연령		0.23*** (0.05)	0.23*** (0.05)	0.23*** (0.05)
기술기반제조업더미		3.37*** (0.34)	3.37*** (0.34)	3.25*** (0.34)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2.67*** (0.22)	2.69*** (0.22)	2.63*** (0.22)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11 (0.23)	-0.07 (0.23)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1 (0.01)	0.01 (0.01)
벤처기업더미				3.00*** (0.82)
상수	-24.54*** (0.86)	-25.92*** (0.85)	-26.31*** (1.01)	-26.27*** (1.01)
관측 수	7,986	7,986	7,986	7,986
R ²	0.13	0.16	0.16	0.16

주 :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 <표 4-5>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해당 기업의 총 고용인원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는 모든 분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정부대상 매출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총 고용인원 사이에도 강하게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모든 분석 모형에서 나타남.
 - 모형에 따라 정부매출유무더미 변수의 추정계수가 1.77~1.79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출액 등이 동일한 상태에서 기존에 없던 정부대상 판로의 개척이 해당 창업기업의 고용인원 1.77~1.79명 증가와 결부됨을 의미함.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업연령 증가는 고용인원 증가와 유의미하게 결부되고, 기술기반 제조업/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고용이 기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고용인원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관계가 나타남.
- 한편 창업자의 성별 및 창업 당시 연령은 해당 기업의 고용인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창업기업에 비해 고용인원이 3명 가량 많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모형 4).

다. 정규직 비율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창업기업실태조사」 2018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대상 매출 비율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는 <표 4-6>에 제시됨.
-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수와 정부매출 유무 더미 변수를 동시에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두 변수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각각 단독으로 분석에 포함할 경우 비율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유무 더미 변수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을 감안하여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수를 핵심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²⁾

2) <표 4-6>에 제시되지 않은 분석 결과는 연구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함.

〈표 4-6〉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 간 관계

종속변수: 정규직 비율(%)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0.42** (0.18)	-0.41** (0.18)	-0.41** (0.18)	-0.42** (0.18)
정부매출비율	0.03** (0.02)	0.03** (0.02)	0.03** (0.02)	0.03** (0.02)
기업연령		-0.05 (0.14)	-0.05 (0.14)	-0.06 (0.14)
기술기반제조업더미		-0.91 (0.90)	-0.94 (0.90)	-1.13 (0.91)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1.00* (0.58)	1.00* (0.59)	0.89 (0.59)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17 (0.61)	-0.11 (0.61)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0 (0.03)	0.00 (0.03)
벤처기업더미				5.03** (2.20)
상수	94.98*** (2.25)	94.71*** (2.27)	94.82*** (2.70)	94.89*** (2.70)
관측 수	7,876	7,876	7,876	7,876
R ²	0.00	0.00	0.00	0.00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 〈표 4-6〉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해당 기업의 정규직 비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모든 분석 모형에서 나타나고 있어, 매출액 증가는 비정규직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관계가 드러남.
- 반면 정부매출 비율과 정규직 비율 사이에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모든 분석 모형에서 나타남.
- 한편 기업 특성 및 창업자 인적 속성 관련 변수들은 대부분 해당 기업의 정규직 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술기반 서비스업에 속하는 창업기업은 기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약하게나마 유의하게 더 높은 관계가 일부

모형에서 드러남.

○ 벤처기업인증 여부와 정규직 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기타 창업기업에 비해 5%p 가량 더 높은 관계가 모형 4에서 드러남.

라. 1인당 연간 총급여와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와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대상 매출 유무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는 <표 4-7>에 제시됨.

<표 4-7>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종속변수 : 1인당 연간 총급여(천 원)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941.80*** (188.34)	980.93*** (194.13)	937.49*** (196.69)	915.02*** (196.69)
정부매출유무더미	-724.95 (643.66)	-870.77 (656.41)	-694.05 (665.56)	-842.26 (668.52)
기업연령		-183.84 (232.55)	-189.66 (234.27)	-187.66 (233.89)
기술기반제조업더미		1,130.21 (776.88)	998.29 (787.12)	531.74 (819.03)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1,238.86* (669.10)	1,218.44* (682.60)	940.85 (695.19)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1,366.66* (772.77)	-1,357.42* (771.53)
설립당시창업자연령			3.65 (32.64)	10.43 (32.75)
벤처기업더미				1,929.57** (954.43)
상수	19,980.37*** (2,735.21)	20,124.82*** (3,211.79)	20,811.2*** (3,655.47)	20,784.99*** (3,649.58)
관측 수	972	972	960	960
R ²	0.03	0.03	0.03	0.04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자체 설문조사.

- <표 4-7>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해당 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 평균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는 모든 분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부대상 매출 유무와 1인당 연간 총급여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추정계수의 부호는 부(-)인 것으로 모든 모형에서 나타남.³⁾
 -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 등이 동일한 상태에서 정부대상 매출이 있는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가 정부대상 매출이 없는 기업에 비해 더 높지 않음을 보여 줌.
- 한편 기업 특성 및 창업자 인적 속성 관련 변수들은 대체로 해당 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
 - 다만 기술기반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연간 총급여가 기타 업종에 비해 약하게나마 유의하게 더 높은 관계가 일부 나타남.
 - 더불어 창업자가 여성인 기업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타 창업기업에 비해 약하게나마 더 낮은 관계가 드러남.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벤처 인증기업은 기타 창업기업에 비해 1인당 연간 총급여가 190만 원 남짓 가량 더 많은 관계가 모형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마. 주당 근로시간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표 4-8>은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대상 매출 비율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지금까지 고용인원, 정규직 비율, 급여 등에 대한 관계를 볼 때는 정부대상 매출 관련 핵심 설명변수로 매출 유무 터미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주당 근로시간과의 관계에서는 매출 유무보다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수

3)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수를 단독으로 분석에 포함하거나, 비율 변수 및 유무 터미 변수를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 비율 변수의 추정계수는 어떤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해당 분석 결과는 연구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함.

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기 때문에 매출 비율 변수를 핵심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핵심 설명변수로 정부대상 매출 유무 더미와 매출 비율 변수를 동시에 포함할 경우, 유무 더미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반면 비율 변수는 유의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⁴⁾

〈표 4-8〉 창업기업의 주당 근로시간,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 간 관계

종속변수 : 주당 근로시간(시간)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0.42*** (0.09)	0.35*** (0.10)	0.37*** (0.10)	0.37*** (0.10)
정부매출비율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기업연령		-0.00 (0.12)	-0.00 (0.12)	-0.00 (0.12)
기술기반제조업더미		0.52 (0.39)	0.57 (0.40)	0.48 (0.41)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0.72** (0.33)	-0.65* (0.34)	-0.71** (0.35)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12 (0.39)	0.12 (0.39)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2 (0.02)	0.02 (0.02)
벤처기업더미				0.39 (0.48)
상수	35.16*** (1.37)	36.23*** (1.61)	35.14*** (1.84)	35.11*** (1.84)
관측 수	979	979	967	967
R2	0.03	0.04	0.04	0.04

주 :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4-8〉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해당 기업의 주

4) 해당 분석 결과는 연구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

당 근로시간 평균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가 모든 분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매출액 등이 동일할 때 정부대상 매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기업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한편 벤처기업 지정 여부를 포함하여 기업 특성 및 창업자 인적 속성 관련 변수들은 대부분 해당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음.
 - 다만 기술기반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기타 업종에 비해 적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바. 근속연수와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간 관계

- <표 4-9>는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월 환산 근속연수와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대상 매출 변수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지금까지는 정부대상 매출 관련 핵심 설명변수로 매출 유무 더미 혹은 매출 비율 변수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근속연수와 관계에서 두 변수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때 둘 다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매출 관련 두 가지 변수를 모두 핵심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함.

<표 4-9> 창업기업의 근속연수, 매출액 및 정부매출 간 관계

종속변수: 근속연수(월 환산)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0.06 (0.32)	-0.22 (0.31)	-0.23 (0.31)	-0.25 (0.31)
정부매출비율	0.04 (0.03)	0.05** (0.02)	0.05* (0.02)	0.05** (0.03)
정부매출유무더미	-3.51* (1.99)	-3.78** (1.88)	-3.59* (1.88)	-4.05** (1.90)
기업연령		4.06*** (0.38)	4.05*** (0.38)	4.06*** (0.38)

〈표 4-9〉의 계속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기술기반제조업더미		5.35*** (1.26)	5.41*** (1.27)	4.84*** (1.32)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0.03 (1.07)	0.06 (1.09)	-0.28 (1.11)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2.43** (1.24)	-2.42** (1.24)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1 (0.05)	0.02 (0.05)
벤처기업더미				2.36 (1.55)
상수	36.53*** (4.70)	12.29** (5.17)	12.49** (5.84)	12.40** (5.84)
관측 수	979	979	967	967
R ²	0.00	0.13	0.13	0.13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자체 설문조사.

- 〈표 4-9〉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해당 기업의 근속연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한편 정부대상 매출과 근속연수 사이에는 일단 정부대상 매출이 발생하면서 근속연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관계가 나타나나, 일단 정부대상 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매출 비중이 증가하면 근속연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관계가 드러남.
 - 예를 들어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대상 매출이 미세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은 정부대상 매출이 없을 때에 비해 평균 근속연수가 4개월 가량 짧으나 만약 정부대상 매출 비중이 100%로 증가한다면 정부대상 매출이 없을 때에 비해 오히려 평균 근속연수가 1개월 가량 더 높은 관계가 나타남.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업연령 증가는 근속연수 증가와 유의미하게 결부되고, 기술기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의 근속연수가 기타 업종에 속하는 기업보다 유의미하게 긴 관계가 나타남.

- 한편 창업자가 여성인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관계가 나타나고,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 및 벤처기업 인증 여부는 해당 기업의 근속연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사. 산업재해율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유무 간 관계

- <표 4-10>은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연간 산업재해율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대상 매출 유무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정부대상 매출 관련 변수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모형 내에 독자적으로 포함되거나 함께 들어갈 때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 4-10>에는 정부매출 유무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만 제시함.⁵⁾

<표 4-10> 창업기업의 산업재해율,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종속변수: 산업재해율(%)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og(매출액)	0.00 (0.06)	-0.00 (0.06)	0.00 (0.06)	0.00 (0.06)
정부매출유무더미	-0.15 (0.20)	-0.13 (0.21)	-0.15 (0.21)	-0.14 (0.21)
기업연령		0.11 (0.07)	0.11 (0.07)	0.11 (0.07)
기술기반제조업더미		-0.26 (0.25)	-0.28 (0.25)	-0.23 (0.26)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0.23 (0.21)	-0.26 (0.22)	-0.23 (0.22)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12 (0.24)	0.12 (0.24)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1 (0.01)	-0.01 (0.01)

5) <표 4-10>에 제시되지 않은 분석 결과는 연구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

〈표 4-10〉의 계속

변 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벤처기업더미				-0.20 (0.30)
상수	0.35 (0.86)	-0.18 (1.01)	0.07 (1.15)	0.07 (1.15)
관측 수	979	979	967	967
R ²	0.00	0.00	0.01	0.01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자체 설문조사.

- 〈표 4-10〉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종속변수가 연간 산업재해율일 때 설명변수로 포함된 여러 변수 중 매출액과 정부매출 유무 더미 포함 어떤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아. 4대보험 가입률과 매출액 및 정부(B2G)매출 유무 간 관계

- 〈표 4-11〉은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과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정부(B2G)대상 매출 유무 간 관계를 OL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⁶⁾
-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률을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할 때는 정부매출 유무 더미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고 정부매출 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매출 관련 설명변수로 유무 더미변수를 써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한편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을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할 때는 정부매출 유무 더미 및 매출 비율 변수 모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예시를 위해 정부매출 관련 설명변수로 유무 더미변수를 써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표 4-11〉은 4대보험 각각에 대해 앞서 〈표 4-5〉-〈표 4-10〉의 모형 4에 해당하는 모형의 분석 결과만을 제시함.

6) 〈표 4-11〉에 제시되지 않은 관련 분석 결과는 연구자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

〈표 4-11〉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 매출액 및 정부매출 유무 간 관계

종속변수 : 4대보험 가입률(%)

변 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log(매출액)	0.05*** (0.00)	0.01*** (0.00)	0.02*** (0.00)	0.02*** (0.00)
정부매출유무더미	0.04** (0.02)	0.01 (0.01)	-0.00 (0.01)	0.01 (0.01)
기업연령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기술기반제조업더미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2)
기술기반서비스업더미	-0.02 (0.02)	0.01 (0.01)	0.01 (0.01)	-0.03** (0.01)
기타산업더미	생략 범주			
창업자여성더미	0.01 (0.02)	0.01 (0.01)	0.03** (0.01)	-0.01 (0.02)
설립당시창업자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벤처기업더미	0.03 (0.02)	0.01 (0.01)	0.01 (0.02)	0.01 (0.02)
상수	0.20** (0.09)	0.75*** (0.05)	0.78*** (0.06)	0.71*** (0.07)
관측 수	967	967	967	967
R ²	0.11	0.04	0.04	0.04

주 :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4-11〉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4대보험 가입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발견됨.
- 창업기업의 정부대상 매출 유무 더미변수는 고용보험 가입률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4대보험 중 다른 보험 가입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음.
- 기업 연령은 4대보험 가입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창업기업의 업종이 기술기반 서비스업인 경우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기타 업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가입률을 나타냄.
- 창업자가 여성인 경우 기타 창업기업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나고, 설립 당시 창업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한편 벤처기업 인증 여부는 4대보험 가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제2절 시나리오 설정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할 시나리오 설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1,020개 창업기업으로부터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정부 정책이 의도하는 대로 완화될 때 각 기업의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정량화함.
- 창업기업의 매출액 및 정부매출 변수가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변화할 때 해당 기업의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나타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 <표 4-5>와 <표 4-6>에 제시된 결과를 활용함.
- 한편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을 제외한 다른 일자리의 질 관련 지표(임금수준, 근로시간, 근속연수, 산업재해율, 4대보험 가입률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표 4-7>~<표 4-11>에 제시된 창업기업의 해당 고용의 질 지표 및 매출액과 정부매출 변수 간 관계를 활용할 것임.
- 다만 이렇게 예측되어 나타난 공공조달정책 변화의 고용효과는 정책이 의도대로 시행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상정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현실에서의 제약을 반영하여 실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효과는 최대치의 25~75% 사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최종 결과를 제시함.

제3절 고용의 양적 및 질적 변화 추정 결과

□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1,020개 창업기업으로부터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정부 정책이 의도하는 대로 완화될 때 각 기업의 매출액 및 정부매출 비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정량화한 결과의 기초통계는 <표 4-12>에 제시됨.

<표 4-12> 시나리오 예측 관련 설문 답변 내역 기초통계

	산술평균	중위값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2018년 연간 매출액 (천 원)	4,461,989	1,600,000	100,000,000	0	8,889,000
2018년 정부대상 매출 비율(%)	16.12	0	100	0	32.85
2018년 정부대상 매출 유무 더미	0.26	0	1	0	0.44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연간 매출액 변화(%)	5.03	0	300	-50	20.19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p)	1.47	0	80	-50	6.96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정부대상 매출 유무 더미 변화	0.07	0	1	-1	0.26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4-12>에 제시된 기초통계에 따르면,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1,020개 표본 창업기업이 기대하는 매출액 증감의 산술평균은 5.03%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매출액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지에 명시하였듯,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이미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아직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이미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따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고, 반면 아직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새롭게 공공조달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연간 매출액 변화 예상치의 최댓값은 300%인 반면 최솟값은 -50%로 나타나고, 증릿값은 0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의 기대치가 높은 것이 산술평균이 정(+)의 값을 갖는 결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임.

○ 1,020개 표본 창업기업이 기대하는,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나타날 정부대상 매출 비율 증감의 산술평균은 1.47%p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정책 시행이 정부대상 매출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평균적인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 예상치의 최댓값은 80%인 반면 최솟값은 -50%, 증릿값은 0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① 현재 정부매출이 0이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매출이 새롭게 생길 것으로 예측하는 기업, ② 현재도 정부매출이 없고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완화되어도 여전히 정부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기업, ③ 현재 정부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후에도 정부대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기업, ④ 현재는 정부매출이 발생하나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정부매출이 0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기업 등 총 4개 유형의 기업에 대해, 정부대상 매출 유무 더미는 각각 0→1, 0→0, 1→1, 1→0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대상 매출 유무 더미의 예측된 변화의 산술평균은 0.07로 나타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가 없던 정부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는 기업이 그 반대 상황을 예측하는 기업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제 최근 시행되기 시작했거나 조만간 시행 계획인 창업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표 4-5>와 <표 4-6>에 제시된 추정 결과 중 가장 많은 독립변수가 통제된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3>에 제시됨.

<표 4-13>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 예측

	총 고용인원에 대한 영향(명)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11 (= $\log(4,461,989 \times 1.0503) - \log(4,461,989)$) $\times 2.31$)	-0.02 (= $\log(4,461,989 \times 1.0503) - \log(4,461,989)$) $\times (-0.42)$)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0.04 (= 1.47×0.03)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12 (= 0.07×1.77)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23 (= $0.11 + 0.12$)	0.02 (= $-0.02 + 0.0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 <표 4-13>에 제시된 결과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창업기업 1곳당 고용인원이 0.23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을 보여줌.
 - 앞서 <표 4-3>에 제시된 기초통계에서 자체 설문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17.53명임을 감안할 때,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고용증가율은 1.31% 가량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고용 증가 예측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창업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정부대상 매출 가능성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0.02%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앞서 <표 4-1>에 제시된 기초통계에서 창업기업실태조사 표본 창업기업의 평균 정규직 비율이 89.87%였음을 감안하면,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야기하는 정규직 비율 상승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정부대상 매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통한 정규직 비율의 상승 효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사용이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에 의해 일부 상쇄되면서

전체적인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지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표 4-7>과 <표 4-8>에서 가장 많은 독립변수가 통제된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4>에 제시됨.

<표 4-14>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1인당 연간 총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예측

	1인당 연간 총급여에 대한 영향 (천 원)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시간)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44.91 (= $\log(4,461,989 \times 1.0503) - \log(4,461,989) \times 915.02$)	0.02 (= $\log(4,461,989 \times 1.0503) - \log(4,461,989) \times 0.37$)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0.01 (= $1.47 \times (-0.01)$)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	-
증감 예측치 총합(A+B+C)	44.91	0.01 (= $0.02 - 0.01$)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4-14>에 제시된 결과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1인당 연간 총급여가 4만 5,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을 보여줌.
- 정부대상 매출 비율 혹은 유무가 1인당 연간 총급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는 매출액 변화를 통해서만 연간 총급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미미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연간 총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매출액 변화를 통해서든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를 통해서든 모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0.01시간 정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근속연수와 연간 산업재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표 4-9>~<표 4-10>의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5>에 제시됨.

<표 4-15>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근속연수 및 연간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 예측

	근속연수에 대한 영향(월)	연간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	-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0.07 (=1.47*0.05)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28 (=0.07*(-4.05))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21 (=0.07-0.28)	0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4-15>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는 근속기간을 0.21개월, 즉 6일 남짓 미세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됨.
 - 이는 매출액 변화 자체는 근속연수에 영향을 못 미치는 반면, 정부대상 매출 변수에서 비율 변수의 긍정적 영향보다 유무 더미 변수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임.
- 한편 연간 산업재해율에 있어서는 앞서 <표 4-10>에서 살펴보았듯 매출액 및 정부대상 매출 관련 변수 중 어떤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이 0으로 예측됨.
- 한편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표 4-11>에 제시된 모형 4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6>에 제시됨.

〈표 4-16〉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4대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 예측

	고용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p)	건강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00 (= $\log(4,461,989*1.0503)-\log(4,461,989)$)*0.05)	0.00 (= $\log(4,461,989*1.0503)-\log(4,461,989)$)*0.01)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00 (=0.07*0.04)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00 (=0.00+0.00)	0.00
	국민연금 가입률에 대한 영향(%p)	산재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00 (= $\log(4,461,989*1.0503)-\log(4,461,989)$)*0.02)	0.00 (= $\log(4,461,989*1.0503)-\log(4,461,989)$)*0.02)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00	0.00

자료 : 자체 설문조사.

- 〈표 4-16〉에 제시된 결과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4대보험 가입률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을 보여줌.
 - 정부대상 매출 변수가 4대보험 가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매출액 증가를 통한 4대보험 가입률 진작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금까지 살펴 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칠 것으로 예측된 내역을 요약하면 〈표 4-17〉과 같음.

〈표 4-17〉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요약

고용의 양 및 질 지표	증감 예측치	표본 평균 대비 비율 변화
총 고용인원	0.23명 증가	1.31% 증가
정규직 비율	0.02%p 증가	0.02% 증가
1인당 연간 총급여	44,910원 증가	0.14% 증가
주당 근로시간	36초 증가	0.02% 증가
근속연수	0.21개월 감소	0.57% 감소
연간 산업재해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고용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건강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국민연금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산재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 〈표 4-17〉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기업 고용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됨을 보여줌.
 - 조사 표본 평균 대비 총 고용인원 증가 예측치의 비율은 1.31%로 나타남.
- 반면 창업기업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고용의 질 지표에 대해 예측되는 표본 평균 대비 비율의 변화 폭이 0.6%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표 4-17〉에 제시된 공공조달정책 변화의 고용효과는 정책이 의도대로 시행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상정하여 도출된 최대치로 봐야 하고, 현실에서의 제약을 반영하면 실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효과는 최대치의 25~75% 사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최종 결과를 〈표 4-18〉에 제시함.

〈표 4-18〉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 현실 제약을 고려한 구간 예측 결과

고용의 양 및 질 지표	증감 예측치	표본 평균 대비 비율 변화
총 고용인원	0.06~0.17명 증가	0.33~0.98% 증가
정규직 비율	0.01~0.02%p 증가	0.01~0.02% 증가
1인당 연간 총급여	11,228~33,683원 증가	0.04~0.11% 증가
주당 근로시간	9~27초 증가	0.01~0.02% 증가
근속연수	0.05~0.16개월 감소	0.14~0.43% 감소
연간 산업재해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고용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건강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국민연금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산재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제4절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고용 변화 추정 결과

- 아래 6장에 제시될 정책제언 중, 만약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의무구매비율을 5%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얼마나 될지 추정한 결과를 미리 4장에서 제시하고자 함.
- 〈표 4-19〉는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추가 정책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앞서 제시된 창업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해당 정책의 창업기업 매출액, 정부대상 매출 비중, 그리고 정부대상 매출 유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도록 요청하여 입수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이때 해당 예측에 응한 전문가들에게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구매제도의 추가 효과를 답변하도록 요청하였고, 현재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업과 미참여 기업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도록 요청하였음.

- 해당 예측을 수행한 전문가는 총 4인으로서, 공공조달법 전문가로서 본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1인이 예측 작업에 동참하였고 그 외 공공조달 및 중소기업 관련 국내 연구 허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두 곳에 재직하면서 공공조달과 중소기업 육성 간 관계에 대해 연구 경력이 풍부한 외부 연구자 3인에게 서면자문 형식으로 예측 작업을 의뢰하였음.

〈표 4-19〉 추가 정책효과 시나리오 예측 관련 설문 답변 내역 기초통계

	산술평균	중위값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매출액 변화(%)	0.88	0.50	2.50	0	1.18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대상 매출 비율 변화(%p)	2.13	1.25	5.5	0.5	2.29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대상 매출 유무 더미 변화	0.04	0.04	0.08	0.01	0.03

자료: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 〈표 4-20〉는 〈표 4-19〉에 제시된 전문가 예측을 바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5%로 설정한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추가 도입될 경우 나타날 창업기업의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을 예측한 결과를 제시함.

〈표 4-20〉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인원 및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 예측

	총 고용인원에 대한 영향(명)	정규직 비율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02 (= $\log(4,461,989 \times 1.0088) - \log(4,461,989)$) $\times 2.31$)	-0.00 (= $\log(4,461,989 \times 1.0088) - \log(4,461,989)$) $\times (-0.42)$)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0.06 (= 2.13×0.03)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07 (= 0.04×1.77)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09 (= $0.02 + 0.07$)	0.06 (= $-0.00 + 0.0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 <표 4-21>은 <표 4-19>에 제시된 전문가 예측을 바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5%로 설정한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추가 도입될 경우 나타날 창업기업의 1인 연간 총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을 예측한 결과를 보여줌.

<표 4-21>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1인당 연간 총급여 및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예측

	1인당 연간 총급여에 대한 영향(천 원)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시간)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8.02 (= $\log(4,461,989 \times 1.0088) - \log(4,461,989)$)*915.02)	0.00 (= $\log(4,461,989 \times 1.0088) - \log(4,461,989)$)*0.37)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0.02 (= $2.13 \times (-0.01)$)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	-
증감 예측치 총합(A+B+C)	8.02	-0.02 (=0.00-0.02)

자료: 자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 <표 4-22>는 의무구매비율을 5%로 설정한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추가 도입될 경우 나타날 창업기업의 근속연수 및 연간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함.

<표 4-22>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근속연수 및 연간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 예측

	근속연수에 대한 영향(월)	연간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	-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0.11 (= 2.13×0.05)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16 (= $0.04 \times (-4.05)$)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05 (=0.11-0.16)	0

자료: 자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 <표 4-23>는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추가 도입될 때 나타날 창업기업의 4대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을 예측한 결과를 제시함.

〈표 4-23〉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4대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 예측

	고용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p)	건강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00 (= $\log(4,461,989 \times 1.0088) - \log(4,461,989)$)*0.05)	0.00 (= $\log(4,461,989 \times 1.0088) - \log(4,461,989)$)*0.01)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0.00 (=0.04*0.04)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00 (=0.00+0.00)	0.00
	국민연금 가입률에 대한 영향(%p)	산재보험 가입률에 대한 영향(%p)
매출액 변화에 따른 증감(A)	0.00 (= $\log(4,461,989 \times 1.0088) - \log(4,461,989)$)*0.02)	0.00 (= $\log(4,461,989 \times 1.0088) - \log(4,461,989)$)*0.02)
정부대상 매출 비율 변화에 따른 증감(B)	-	-
정부대상 매출 유무 변화에 따른 증감(C)	-	-
증감 예측치 총합(A+B+C)	0.00	0.00

자료 : 자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 〈표 4-24〉는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추가 도입이 창업기업의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칠 것으로 예측된 내역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음.

〈표 4-24〉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요약

고용의 양 및 질 지표	증감 예측치	표본 평균 대비 비율 변화
총 고용인원	0.09명 증가	0.51% 증가
정규직 비율	0.06%p 증가	0.06% 증가
1인당 연간 총급여	8,020원 증가	0.02% 증가
주당 근로시간	72초 감소	0.05% 감소
근속연수	0.05개월 감소	0.13% 감소
연간 산업재해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고용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건강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국민연금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산재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 다만 <표 4-24>에 제시된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고용효과는 해당 정책이 의도대로 시행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상정하여 도출된 최대치로 봐야 하고, 현실에서의 제약을 반영하여 실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효과가 최대치의 25~75% 사이에 있을 것으로 가정할 때의 최종 결과가 <표 4-25>에 제시됨.

<표 4-25>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현실 제약을 고려한 구간 예측 결과

고용의 양 및 질 지표	증감 예측치	표본 평균 대비 비율 변화
총 고용인원	0.09명 증가	0.13~0.38% 증가
정규직 비율	0.06%p 증가	0.02~0.05% 증가
1인당 연간 총급여	8,020원 증가	0.01~0.02% 증가
주당 근로시간	72초 감소	0.01~0.04% 감소
근속연수	0.05개월 감소	0.03~0.10% 감소
연간 산업재해율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고용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건강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국민연금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산재보험 가입률	0.00%p 증가	0.00% 증가

자료: 중소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자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

- <표 4-25>에 제시된,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는,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의무구매비율을 5%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약간이나마 더 있을 것임을 보여줌.
- 고용의 질에 대한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나, 고용의 양에 대해서는 앞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효과로서 추정된 표본 평균 대비 0.33~0.98% 증가를 약간이나마 추가로 증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5절 소결

- 본 장에서 살펴본,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고용 변화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창업기업당 총 고용인원은 0.06~0.17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표본 평균 대비 0.33~0.98% 증가에 해당하여 고용의 양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창업기업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은 0.01~0.02%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표본 평균의 0.01~0.02%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창업기업 종사자 1인당 연간 총 급여는 11,228~33,683원, 즉 표본 평균 대비 0.04~0.1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됨.
- 창업기업 종사자 1인당 주당 근로시간은 9~27초, 표본 평균 대비 0.01~0.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영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창업기업 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0.05~0.16개월 감소하여 표본 평균의 0.14~0.43%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 그 외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창업기업의 산업재해율이나 4대보험 가입률에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6장에 제시될 정책제언 중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구매 비율을 5%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약간이나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의 질에 대한 추가 영향은 미미하나, 고용의 양에 대해서는 앞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효과로서 추정된 표본 평균 대비 0.33~0.98% 증가를 약간이나마 더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제5장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내용

제1절 좌담회 구성개요

-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창업벤처기업 공공구매 활성화정책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확인하고자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좌담회를 통한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음.
-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현재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그룹과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그룹을 나누어서 각 1회씩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 공공구매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1회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그룹에 대한 인터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정책들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 만약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실제 현재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참여기회가 생긴다면, 이미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 만약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실제 현재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참여기회가 생긴다면, 이미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 실제 창업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 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이미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성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그룹에 대한 인터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정책들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 만약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실제 현재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참여기회가 생긴다면,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 만약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실제 현재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참여기회가 생긴다면, 해당 기업의 고용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 실제 창업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 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이미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지?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정책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 만약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실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늘어난다면, 조달 물품 수요처인 공공기관이 처하게 될 제약사항은 무엇인지?
 - 창업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라는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새로운 제약

추가로 인해 공공기관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창업벤처기업 성장지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 좌담회 개최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1〉 창업벤처기업 및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개최 개요

일시 및 장소	좌담회 참여그룹	좌담회 참여명단
2019. 6. 24. 10:00~12:00 (주)나우엔벤처 좌담회룸	공공조달시장 참여 창업벤처기업	A사(교육서비스분야 창업기업) B사(목재가공-제조업분야 창업기업) C사(정보서비스업 벤처기업) D사(정보처리 IT개발-제조업분야 벤처기업) E사(정보서비스업분야 벤처기업)
2019. 6. 25. 10:00~12:00 (주)나우엔벤처 좌담회룸	공공조달시장 미참여 창업벤처기업	F사(여가서비스업분야 창업기업) G사(과학기술서비스업분야 창업기업) H사(제조업-컴퓨터주변기기분야 창업기업) I사(제조업-서비스주변기기분야 창업기업) J사(제조업-스포츠용품분야 벤처기업) H사(과학기술서비스업-기술서비스분야 벤처기업)
2019. 7. 5. 10:00~12:00 서울역 KTX2 회의실	공공구매기관	T기관(준시장형 공기업) K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S기관(시장형 공기업) H기관(준시장형 공기업) K기관(시장형 공기업) G기관(시장형 공기업) N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제2절 공공조달 참여 창업벤처기업 좌담회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벤처나라

- 참석한 기업 모두 벤처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벤처나라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함. 특히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힘든 창업벤처기업에 나라장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임.
- 그러나 무늬만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에 들어와서 혜택만을 누리고 떠나는 현상은 막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훌륭한 상품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잘 골라내서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규격 등이 공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음. 벤처나라에서 8개의 상품군을 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벤처나라에 등록할 경우 실제로 자신의 상품의 장점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 벤처나라는 전반적으로 물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용역(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창업벤처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면제제도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면제제도는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기업들도 존재하고 유용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함. 다만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서류업무가 많다는 점은 문제임.

□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연구개발(R&D)을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창업벤처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둔다고 하더라도 수요기관에서 감사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임.

□ 경쟁적 대화방식

-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발주청과 특정업체의 결탁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계약방식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존재함. 이러한 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전반적인 의견

- 전반적으로 창업 후 연도만을 기준으로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음. 7년이 지난 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창업벤처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쉽게 주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할 경우 어렵게 기업을 키워낸 선행주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2.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

□ 재무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 신규 창업벤처기업들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완화할 경우 기존 창업벤처기업들이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은 기존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 공공기관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성과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함.

□ 대체시장을 통한 재무성과 유지의 가능성

-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으로의 고객대체를 통해 기업의 재무성과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도 있었음.
-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경우 정부부문 사업의 비율이 60~70%에 달

하는 기업으로부터 5%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 등 다양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

□ 전반적인 고용에 대한 영향

-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기존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율이 낮아질 경우에도 기존기업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고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현상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대체적인 시장을 찾을 것이기 때문임.
- 다만 국가지원 R&D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직 인원들의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함.

□ 산업재해율, 4대보험 가입률 등에 대한 영향

-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기존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율이 낮아질 경우 산업재해율이나 4대보험 가입률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수당이나 복지서비스 수준, 근로시간 등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4.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 판로지원 관련

- 박람회 등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표만을 맞추기 위한 생색내기용인 경우가 많음. 기업들의 판로개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람회 등의 운영이 되어야 함.

제3절 공공조달 미참여 창업벤처기업 좌담회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벤처나라

- 참석한 6개 기업 중 벤처나라를 알고 있던 기업은 세 군데였고, 나머지는 벤처나라를 처음 들어봤다고 함. 벤처나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함. 이름도 ‘벤처나라’보다는 좀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는 ‘벤처장터’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됨.
-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에서 벤처나라에 등록된 기업이 한 곳 있었음. 이 기업은 벤처나라에 등록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벤처나라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지는 못했음. 상품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음. 상품이 어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벤처나라에서는 이러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웠음. 벤처나라에 참여했던 초기에는 1기업에서 1개의 상품만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서비스기업(설계서비스 등)은 벤처나라에 참여가 어렵다고 느낌. 벤처나라는 상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벤처나라도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임. 벤처나라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매개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음.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면제제도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면제제도는 유용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함.
- 다만 스마트팩토리와 같이 설계와 상품제작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추세인데 직접생산확인을 고집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맞지 않

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됨.

□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수의계약의 요건을 창업벤처기업에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런데 혁신적인 상품이어서 이 상품을 1개사만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비교견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

□ 제한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창업벤처기업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반함.

□ 경쟁적 대화방식

-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가격경쟁으로 흐를 경우에도 이러한 장점이 잘 발휘되기 힘들.

□ 전반적인 의견

- 위와 같은 제도들이 너무 쉽게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해야 창업벤처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벤처나라 등의 시스템에 창업벤처기업을 등록시켜 놓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동영상 업로드 등)를 제공하고, 수요기관들에 이러한 정보를 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공공조달시장은 노력 대비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 벤처창업 관련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 각종 인증제도가 기존의 상품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음. 새로운 상품에 맞추어서 인증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

□ 재무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 서비스(설계)를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성과에 그리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 의료기기를 주로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 수요처가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총 매출액 중 정부매출액 비중이 10%에서부터 50%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답변한 기업들이 있었음.

3. 실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시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

□ 고용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고용성과에 바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수 있음. 왜냐하면 본사직원은 그대로 두면서 외주나 OEM 등을 통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임.
- 생산직과 관리직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생산직은 아무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음.
- 임금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아무래도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면 급여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게 되기 마련임.
- 본사직원은 그대로 두면서 외주를 통해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회사의 고용의 질은 아무래도 본사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음.
- 52시간제도로 인해서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개선방안

-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들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각종 검증이나 인증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음.
- 경쟁적 대화제도가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이 필요함.
-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절차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 서비스 분야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로 다른 회사에서 Copy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고궁야간투어가 그 예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함.

제4절 공공구매기관 좌담회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 벤처나라

- 벤처나라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음. 조달청 설명회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함. 그러나 벤처나라를 통해서 실제로 구입해본 적이 있다는 참석자는 없었음.
-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은 아직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벤처나라를 통해서 잘 구입을 하지 않게 됨. 그리고 창업벤처기업제품을 구매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사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벤처나라를 통해서 잘 구매를 하지 않게 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필요한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벤처나라까지는 잘 가지 않게 됨.
- 중소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과 같이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됨. 의무구매제도만 이행하는 데에도 부담이 됨. 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의무구매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음.

- 공사가 위주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벤치나라에서 구입할 만한 품목 자체가 별로 없음.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상향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이 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당 금액이 큰 공사 등을 통해서 목표비율을 채우는 것이 쉽기 때문에 물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함.
- 구매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이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창업벤처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도입

-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소기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제한경쟁입찰제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적인 측면이 존재함.

□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임.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 대상인데,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러한 제품에 대한 구매수요 자체가 없음.

□ 수의계약 요건 완화

-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부담과 경쟁업체의 민원 때문에 수의계약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음.
- 한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에 성공하면 이를 토대로 다른 수요기관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벤처기업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전반적인 견해

- 성과공유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사무실 제공, 창업박람회 개최, R&D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이미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음.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구매제도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함께 볼 필요가 있음.
- 창업벤처기업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위 정책들은 실제로 작동하기는 힘들.

2. 실제 창업벤처기업 대상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때 공공기관이 처하게 될 제약

□ 품질과 가격상의 제약

- 품질이 가장 문제임. 아파트 건설을 하는 경우에 입주자들이 이름 없는 제품을 사용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있음. 공공기관 사업부서의 경우에도 기존에 잘 알려진 회사의 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해주면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음.
-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기존의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규격이 불필요하게 높은 경우가 많음.

□ 의무구매제도 도입의 문제점

- 만약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의무구매제도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음. 기존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의 경우에도 paper company가 많음.

- 또한 기존의 의무구매제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개의 구매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1타 3피)들이 많고, 이것을 사회적 약자기업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진정으로 열심히 하려는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 되는 경우도 많음.

3.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약 추가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약 추가의 의미
- 창업벤처기업 육성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음.
-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가치와 사회적 약자보호의 가치 중에 전자를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참여자와 후자를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참여자가 유사한 비율이었음.

4.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정책의 개선방안

- 의무구매비율제도의 도입 관련
- 의무구매비율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면 공공기관들의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가 늘어날 것임. 예를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리더십 지표, 사회적 가치 지표 등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10%)가 있는데 여기에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끼워넣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음.
- 기존의 우선구매제도들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는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직접생산확인 등을 철저히 하는 등 해당 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우선구매비율을 전체구매금액 대비 %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물품구매

금액 대비로 하거나, 각 공공기관의 필수구매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비로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공공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목표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

-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에 따른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임. 이를 위해서 하자보증 등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정부가 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창업벤처기업제품을 선정하였을 때 감사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음. 감사원에서는 수의계약을 1차적인 조사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경쟁적 대화방식

-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 절차가 아직 불명확함. 이의 사용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부터의 수의계약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에서는 이에 대한 수의계약근거를 두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 그러한 예임.
-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한경쟁입찰을 활성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함. 계약대행기관(장애인개발원)의 추천을 통한 지명경쟁입찰제도와 같은 제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제도의 경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업체의 Pool이 지나치게 적어서 소수회사가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제품의 중소기업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음. 벤처는 대출만 유지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진정한 벤처기업인지의 의문이 있음.
- 조달청의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함.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 기업들을 접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제품을 구매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경우가 있음.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이에 대한 수요를 가진 공공기관들을 잘 매칭해주는 것이 필요함.
-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필요성이 많은데(예를 들어 직접생산제도) 관련부처에서는 유권해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음. 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음.
- 창업벤처기업들이 지나치게 공공조달시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기간을 한정하여 혜택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도 적격심사과정에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 신용도평가에서 만점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음. 이러한 기존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5절 소결

□ 창업벤처기업의 의견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았음. 임금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고용의 양이 당연히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음.
-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들과 미참여하고 있는 창업벤처

기업 간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전반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음.
-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 공공구매기관의 의견

- 창업벤처기업제품의 의무구매비율제도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제품구매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았음.
- 창업벤처기업제품의 의무구매비율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의 의무구매비율제도가 갖고 있는 부작용(일부 기업의 독점, 무늬만 중소기업의 수주, 구매절차의 복잡성 가중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창업벤처기업제품의 구매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음.
-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에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음.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유형의 정부 정책 중 극히 일부이긴 하나, 해당 정책이 본래 취지대로 충실히 시행된다면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예측됨.
-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나타날 기업당 고용인원 증가 폭이 표본 평균 대비 0.33%에서 0.98% 사이인 것으로 예측되어, 고용의 양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창업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1장에서 해당 정책의 고용연계성을 분석할 때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출액 경로와 공공조달비율 경로에 걸쳐 상반되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 것과 부합함.
- 그 외 여러 고용의 질 관련 지표에 대해서도 대체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여러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공공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만으로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통해서 고용효과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창업벤처기업 제품구매제도와 사회적 약자기업의 구매제도는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창업벤처기업 제품구매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고용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R&D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공구매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품의 개발 → 공공구매 → 민간시장 진출 → R&D에의 재투자 등 공급체계 전반이 선순환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구매가 전략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구매제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공구매제도는 창업벤처기업들이 민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창업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함.

- 첫째,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의 매칭, 제도 간 연계성의 강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도입, 감사 부담의 경감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도입 여부, 일상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의 완화,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 강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제2절 단기적인 정책제언

□ 수요와 공급의 매칭

-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창업벤처기업들이 벤처나라에서 보다 다양한 홍보기회를 갖고 이것이 공공기관들의 수요와 매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벤처나라 등록만으로 납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수요기관들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창업벤처기업들의 제품의 우수성을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이것이 관련 된 수요기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국가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하며, 혁신조달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특허 빅데이터 관점의 검색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특허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관계부처합동(2019. 7)]. 이러한 방안을 통한 수요조사가 실제로 창업벤처기업의 공급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위해서 현재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제품 개발역량 보유기업과 제품 수요처인 공공기관을 매칭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며, 특허청 특허거래 전문관 등을 활용하여 수요기관과 혁신제품 개발역량 보유기업 간 매칭을 컨설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관계부처합동(2019. 7)].
- 위와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조달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즉, 창업벤처기업 분야 및 혁신제품 분야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중소기업벤처부 및 조달청 등에서

구매분석관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수요기관과 공급업체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구매분석관들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를 매칭해주기 위해서는 각 수요기관의 특성, 공급업체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예를 들어 수요기관의 구매대상에 따라서는 공급업체가 1~2개에 불과한 곳이 존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창업벤처기업 제품구매를 강제하기가 곤란할 수 있음. 따라서 구매분석관을 활용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업무분야 및 구매대상제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 현재 조달청에서는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각 실시하고 있음. 조달청의 제도는 기술개발단계(TRL 7~9단계)의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는 제도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는 제도임.
- 이 두 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지원대상이나 지원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간 보완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양 제도의 지원대상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미세먼지 저감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범구매 선정제품은 기술개발인증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술개발인증제품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청의 지원대상 사업분야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대상 인증분야를 일부 일치시킬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양 제도 간의 절차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양 제도는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에서 선정절차를 통과하여 시범구매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기

술개발인증이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 간의 절차적인 연계가 필요함.

□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도입

-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에 각 부처·공공기관의 연간 조달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기획재정부(2019.7)].
-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도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비해 뒤에서 보게 되는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창업벤처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구매를 하기보다는 혁신성이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도가 혁신조달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 제도는 ① 이미 존재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일부 중첩될 수 있다는 점, ② 공공기관의 구매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③ 혁신제품 지정을 받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도’를 통합함으로써 구매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술개발제품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감사 부담의 경감

- 창업기업의 우수 R&D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요건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감사의 부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 상황임. 최근 도입된 경쟁적 대화방식의 경우에도 참여자가 적을 경우 감사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실적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점에서도 감사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나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활용하여 창업벤처기업과의 수의계약,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로 인한 감사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처럼 적극행정면책이나 사전컨설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공공조달(혁신조달 포함)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간의 인적 교류, 정보 교환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혁신조달을 위해 수의계약 등을 통한 발주청의 재량이 넓어질 경우에는 부패 발생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징계제도, 부정당업자제재제도 등)의 엄격한 집행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

제3절 중장기적인 정책제언

□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도입 여부

- 현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50%),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10%) 등은 도입되어 있으나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이번 연구과정에서 공공구매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무구매비율(예컨대 5%)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그리고 이의 달성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창업벤처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① 이미 존재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일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 공공기관의 구매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③ 무늬만 창업벤처기업으로부터 공공구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④ 위의 비율(5%)은 이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점, ⑤ 특정기업만 공공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임.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선별해내는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앞서 4장 말미에 제시한 대로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추가 도입의 창업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구매비율을 5%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약간이나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고용의 질에 대한 추가 영향은 미미하나, 고용의 양에 대해서는 앞서 4장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정책의 효과로서 추정된 표본 평균 대비 0.33~0.98% 증가를 약간이나마 더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일상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의 완화

- 직접생산확인제도 수수료 면제제도,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 입찰참여부담 경감 등은 창업벤처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점에서 공급업체 좌담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다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서류제출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이는 특히 공공조달시장 진

출경험이 적은 창업벤처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창업벤처기업 관련협회의 시스템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벤처나라 포함)을 연계함으로써 각종 실적 등의 이중 제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좌담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제도 자체의 완화 의견도 있었음. 직접생산을 반드시 요구하는 변화된 생산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적용범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제도 자체의 완화는 직접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고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 강화

-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구매에 대한 의존성을 점차적으로 약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인 8(a)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기업에 연차별 자립정도를 제시하고 일정기간(5년)이 지나면 졸업시키는 제도를 운영하여 자립성을 키우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표 6-1〉 미국 8(a)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연차별 자립 정도⁷⁾

이행단계	8(a)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수입의 비율
1년차	15-25%
2년차	25-35%
3년차	35-45%
4년차	45-55%
5년차	55-75%

-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

7) 한국조달연구원(2011), p. 24.

소기업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혜택이 없어질 경우 기업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우리나라의 법제는 위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보호'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을 민간 부문의 매출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일정한 목표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자립성을 키워나가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고용의 양과 질을 일정 정도 높임으로써 자립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지에 따라 지원의 규모를 단계별로 조절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 있을 것임.

제4절 정책제언 요약

□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제언 내용을 표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6-2〉 고용효과 증진을 위한 창업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선방안

정책주기	정책제언 분야	정책제언 내용
단기	수요와 공급의 매칭	• 창업벤처기업 분야 및 혁신제품 분야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구매분석관으로 채용 • 수요기관의 특성, 공급업체의 현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기관과 공급업체를 매칭
	제도간 연계성 강화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조달청),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중소기업청) 간의 지원대상 및 절차 면에서 연계성 강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	• 기존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구매의 복잡성을 최소화 • 기술개발제품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표 6-2〉의 계속

정책주기	정책제언 분야	정책제언 내용
단기	감사부담의 경감	• 적극행정면책제도, 사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창업벤처기업과의 수의계약, 경쟁적 대화 등에 따른 감사부담을 완화
중·장기	창업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도입 여부	• 기존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과 중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 여부에는 신중함이 필요 • 만약 도입될 경우 창업벤처기업의 욕구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함께 마련될 필요
	일상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의 완화	• 창업벤처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서류제출의무 등 일상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 전자조달시스템과 협회 등 외부시스템의 연동을 강화하여 서류제출의무를 완화
	창업벤처기업의 자립성 강화	• 매년마다 일정한 고용목표 등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에 구매가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이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7. 12),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 관계부처합동(2018. 11),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 관계부처합동(2019. 7),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 국무조정실(2018. 10),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10. 23.
- 기획재정부(2019. 7),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출범(KICK-OF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7. 29.
- 기획재정부(2019. 10),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 민간전문가 위촉을 통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본격화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10. 16.
- 김기선 외(2013),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저임금근로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대식 외(2016), 『공공혁신조달을 위한 ‘경쟁적 대화방식’ 계약제도 세부운영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 김대인(2013), 「공공조달법과 공생발전 -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제4호.
- 김대인(2017), 「EU의 경쟁적 협의제도에 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 김수환 외(200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김원규(2015),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안정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57호.
- 김유빈 외(2015),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포 외(2006), 『공공조달시장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 이민철·정태현(2017), 「공공조달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

소기업연구』, 제40조 제4호.

이용하 외(2018),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조달 제도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2호.

이우진(2017),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길환·정유훈(2014),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 예산정책처.

조달청(2016. 10), 「벤처·창업기업 전용물 「벤처나라」 구축 및 이용안내」.

조달청(2019. 3), 「공공조달시장 활용해 혁신성장·경제활력 이끈다」, 조달청 보도자료, 2019. 3. 7.

조달청(2019. 4), 「벤처나라, 공공조달시장 코스닥으로 키운다」, 조달청 보도자료, 2019. 4. 16.

조달청(2019. 5), 「혁신제품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 생긴다」, 조달청 보도자료, 2019. 5. 21.

중소벤처기업부(2019. 1),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2019. 4), 「2018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역대 최고치(94조 원) 달성」,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2019. 4. 25.

중소벤처기업부(2019. 5),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본격적인 확대 추세」, 중소기업부 보도자료, 2019. 5. 20.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a),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원자료.

_____(2019b),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최종화 외(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2011), 『미국연방조달규정해설』.

한상범(2015),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홍충기·김병건(2017),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 기업규모별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European Commission(2014), “Public Procurement as a Driver of Innovation in SMEs and Public Services.”

Lember, Veiko et al.(2013),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olicy
- International Perspective,” Springer.
OECD(2018), “SMEs in Public Procurement: Practices and Strategies
for Shared Benefits.”
SIGMA(2016),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Public
Procurement.”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

▪ 발행연월일	2019년 12월 18일 인쇄 2019년 12월 28일 발행
▪ 발 행 인	배 규 식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 판 · 인 쇄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260-0331-0 (비매품)